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3-25-③

신청기관 : 국회사무처(법제총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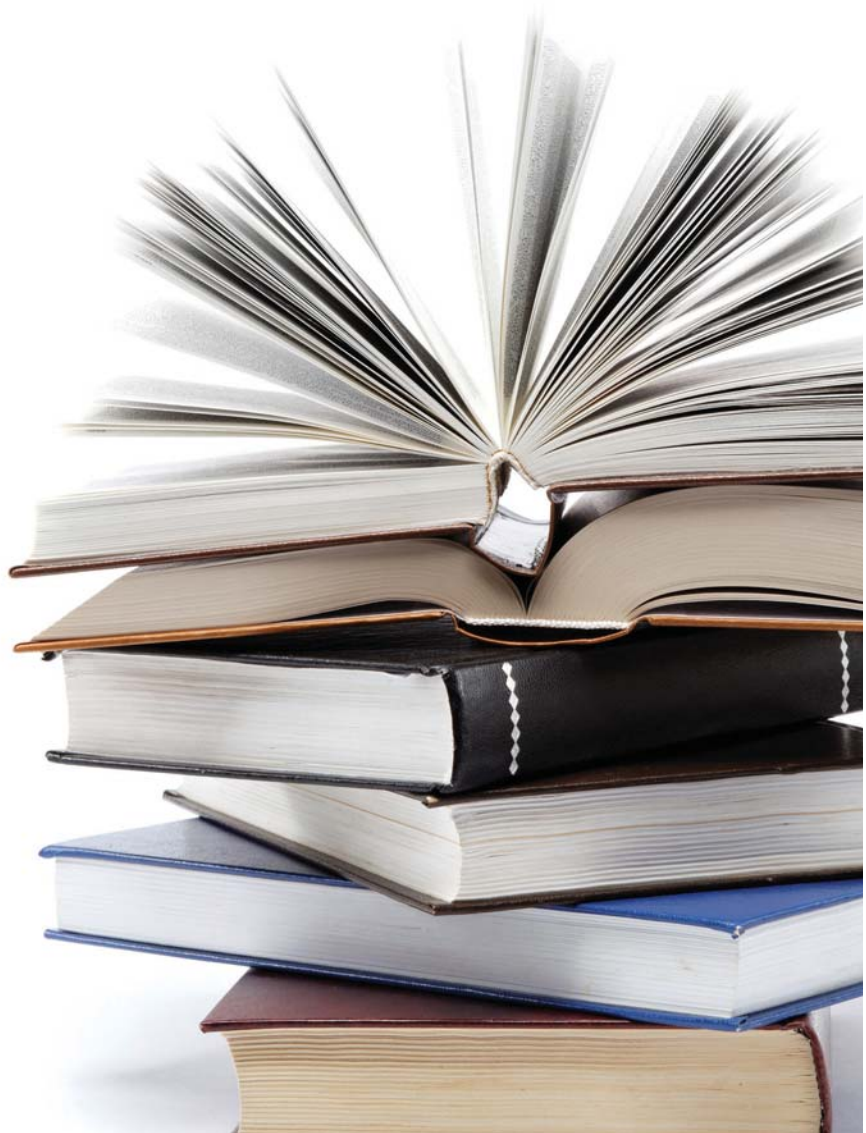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홍종현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3-25-③

신청기관: 국회사무처(법제총괄과)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연구자: 홍 종 현

(법제분석지원실 초빙연구원)

2013. 12. 09.

[법제분석요약]

○ 검토할 주요 쟁점

1. 현행법상 재정지원수단의 의의 및 유형
2.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및 재정지원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국회 법제실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률체계정비사업에서 출연금, 보조금, 출자, 투·융자 등에 대한 규율정비를 위한 법제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해외 입법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주요 국가의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조, 출연, 출자, 융자에 대한 표준입법모델을 제시하고 법률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 출연금은 보조금의 경우와 달리 일반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집행상 재량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입법단계에서부터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은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
-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부담금, 교부금 그리고 협의의 보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미국의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에 관한 법률”
 -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Federal Spending Act of 2008
 -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 일본의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1. 보조금, 2. 부담금, 3. 이자보급금, 4.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가지를 열거함.
- 일본에서 보조금의 70~80%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원은 일반회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일반회계상 지원형식은 交付金・補助金・負擔金・補給金・委託費 5가지로 구성됨.
- 일본은 출연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독일은 기본법(헌법)과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연방재정청의 해석과 적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영국은 1988년 지방정부 재정법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에 기초하여 중앙과 지방의 재정합의(Local Government Fiance Settlement)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함.
- 우리나라와 다른 재정제도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화양상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여야 함.

목 차

I. 서론	1
1. 분석의 배경	1
2. 분석의 대상 및 주요쟁점	1
II. 재정지원수단의 의의 및 유형	3
1. 현행법상 재정지원수단의 규율체계	3
2. 출연금에 대한 법적 쟁점	4
3. 보조금에 대한 법적 쟁점	6
4. 소결 : 재정지원수단의 유형별 검토의 실익	8
III.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2
1. 미국의 재정지원수단	12
2. 일본의 재정지원수단	35
3. 독일의 재정지원수단	39
4. 영국의 재정지원수단	44
IV.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46
1. 재정제도 및 재정여건의 변화	46
2.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	48
V. 결론	49
1.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개선방향	49
2.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개선방안	50

3.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1
참 고 문 헌	54
부 록	57
1.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	57
2. 200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	67
3. 일본의 재정지원법령에 대한 유형별 검토	88

I. 서론

1. 분석의 배경

- 국회 법제실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률체계정비사업에서 출연금, 보조금, 출자, 투·융자 등에 대한 규율정비를 위한 법제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해외 입법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개별 법률마다 상이한 입법기준 및 형식이 적용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례가 선례로 활용되면서 법적용상의 형평성이 저해됨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오해 및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출연금과 보조금 규정이 동일한 내용의 구성항목에서 법률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기능과 맞지 않는 입법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함.
- 주요 국가의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조, 출연, 출자, 융자에 대한 표준입법모델을 제시하고 법률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2. 분석의 대상 및 주요쟁점

- 출연금은 보조금의 경우와 달리 일반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집행상 재량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입법단계에서부터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은 국가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이므로 반드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있고, 용도 외 사용금지규정 위반시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일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은 시설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출연금은 이런 용도제한이 없으므로 단체(기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활용함.
 - 출연금 지원의 주체, 대상, 요건,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규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입법례를 조사하여 표준입법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출연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위임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연금 지원 이후의 관리·감독 규정을 살펴보고 표준 입법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므로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 재정지원의 의의 및 유형

1. 현행법상 재정지원수단의 규율체계

-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지원수단으로서 보조금, 출연금, 출자, 투·융자 등 다양한 수단(형식)이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법률마다 상이한 입법기준이 적용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례가 선례로 활용되면서 법적용상의 형평성이 저해됨은 물론 일반 국민의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우려

- 특히, 출연금과 보조금 규정은 동일한 내용의 구성항목에서 법률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기능과 맞지 않는 입법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함
- 출연금은 보조금의 경우와 달리 일반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집행상 재량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입법단계에서부터 보조금과 출연금에 대한 규율을 사전에 그 기능과 성질을 고려하여 구별하여야 함.
-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이므로 반드시 개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
-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있고, 용도 외 사용금지규정 위반시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일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2. 출연금에 대한 법적 쟁점

- 출연금의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2조
 -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 예산회계법에서는 출연금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이 출연금 지원규모가 매년 확대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목적상의 제한을 위한 규율을 마련함.
- 「국가재정법」상 출연금의 개념

-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학;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출연금의 개념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
 - 「국가재정법」의 출연금 개념과 비교하여 보면, 이는 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정의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¹⁾
- 출연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그 밖의 정부출연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0) 그리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15)을 합하여 현재 총 58개 기관이 있음.
 - 기타 정부출연기관은 개별법상 출연금의 법적 근거는 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주로 묶을 수 없는 기관을 의미함.
- 국가의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출연의 범위
 - 현실적 측면 : 출연방식의 재정지원은 기술지향적 연구개발에는 적합하지만, 시장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오히려 후자의 경우에는 재정 투·융자 또는 출자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²⁾

1) 이에 대하여는 국회 예산정책처, 『출연사업 평가』, 2010. 6, 15쪽 참조.

2)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추진방식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재정지원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국회 예산정책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2009. 5, 22쪽 이하 참조.

- 법적 규율의 측면 : 국가재정법 제12조를 고려할 때 모든 국가 연구개발사업(R&D)은 출연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출연의 근거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출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2009~2010년 당시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국가재난관리 표준개발사업」을 위탁하면서 매년 5억원씩 출연한 바 있는데, 당시 출연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³⁾

3. 보조금에 대한 법적 쟁점

○ 보조금의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54조)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 예산회계법 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집행실적이 각 부처에만 보고되고 국회에 제출되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3) 당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근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추진근거는 될 수 있어도 출연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를 출연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법만을 근거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로 인정할 경우 출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고, 국가재정법 제12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날카롭게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 예산정책처, 『출연사업 평가』, 2010. 6, 56쪽 이하 참조.

4)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과 결정의 절차 및 사후관리,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보조금의 종류 및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보조사업별로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업 중에서는 법률적 근거 없이 수행되는 사례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2006년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만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부처의 보조금 지급(교부)은 100%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다수 있어서, 2010년 5월 17일 이를 개정하여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실적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함.⁵⁾

○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유형

-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함.⁶⁾
- 부담금 :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사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교부금 :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국민투표, 징병 등 중앙정부가 스스로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와 경비의 효율화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
- 협의의 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정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5)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체(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개인 등)가 해당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지 아니면 다른 주체를 통하여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직접보조와 간접보조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타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6) 이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참조.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앙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

○ 보조금의 지급대상

-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개인 등 중앙정부가 아닌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급함.

○ 보조금의 특성

- 보조금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고 지출

○ 보조금의 구별개념

- 교부세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야 할 재원을 편의상 중앙정부가 일괄징수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조금에 포함하지 않음.
-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국고에서 지급되는 국세징수교부금도 보조금이 아님.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쌍무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급부금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4. 소결 : 재정지원수단의 유형별 검토의 실익

○ 출연금과 보조금의 구별

- 출연금은 반드시 개별 법률에 지급(교부)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보조금은 반드시 개별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교부하고, 용도 외 사용금지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위반시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고(동법 제30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일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동법 제33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는 등(동법 제41조) 엄격한 제한 내지 규율을 가하고 있으나, 출연금은 사용용도가 포괄적이고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일반 규정만 적용되므로 보조금에 비해 재량이 넓게 인정됨.

- 보조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를 통해 보조금액을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받아야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교부된 출연금의 집행잔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비연구개발비(사업비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므로 매년 기재부에서 작성·통보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면 충분함.)

○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제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능함.

7) 이와 같은 법적 규율체계로 말미암아 대체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의 처리에 관하여 실제적인 규율의 근거가 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배포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기타 정부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예산 및 회계에 대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 때 “사후정산 후 집행잔액 반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보조금은 시설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고, 출연금은 이런 용도제한이 없으므로 단체(기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활용하고 있음
 - 출연금 지원의 주체, 대상, 요건,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규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입법례를 조사하여 표준입법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출연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위임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기 때문에 중복지원금지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지원평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일반법적 규율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출연과 출자 등에 대한 일반법적 규율을 보조금과 별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규정으로 일원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의 문제로 환원될 수도 있음.

	출 연	출 자	재정 투·융자	보조금
개 념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금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 대상에게 융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

	출 연	출 자	재정 투·용자	보조금
일 반 법 적 근 거	없음	없음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
개 별 법 적 근 거	반드시 필요함	반드시 필요함	불필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⁸⁾
지 급 대 상	법령에 따라 설 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정부출연기관	공 익 사 업 을 수행하는 법 인	개인, 법 인 등	사업자, 사업자 단 체, 지자체 등
용 도 지 정 여 부	- 기관출연금 : 비지정 - 목적출연금 : 지정	비지정	비지정	사용용도 지정 (집 행상 재량 없음)
사용잔 액 및 이자의 처리	사후정산 불필요 ⁹⁾	사후정산 불 필요	상환 및 이자지급 필요	사후정산 및 집행 잔액 반환 ¹⁰⁾

8) 대부분 개별 법령에 “~보조할 수 있다”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급근거가 명기되어 있으나, 이는 반드시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19조에 의거하여 처리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에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배포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의거하게 된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기타 정부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사후정산 후 집행잔액 반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10) 이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참조.

	출 연	출 자	재정 투·융자	보조금
세 출 과 목 구 분	350 (출연금)			320-01(민간경상보조) 320-07(민간자본보조) 330-01(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3(자치단체 자본보조) 340-03(해외 자본이전)

Ⅲ.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미국의 재정지원수단

- 미국의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에 관한 법률”¹¹⁾
 -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Federal Spending Act of 2008
 -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 미국 재정법의 기초 : 연방재정주의(Fiscal Federalism)
 - 연방재정주의는 각 주들이 재원을 분담하여 연방차원의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함.
 - 연방재정주의는 점차 연방 - 주 -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원 공유 및 균등화와 아울러 점차 각 주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됨.
 - 그 이후 연방재정주의는 연방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인구이동(movement)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확대·변모

11) 각 법안의 원문 및 번역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재정법의 역사적 고찰¹²⁾

- 연방정부의 각 주정부에 대한 자금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은 1837년에 국고잉여금을 각 주의 인구수를 기초로 한 산식에 따라 배분한 사례가 있음.
- 1802년에는 보조금(grant-in-aid)가 아니라 토지양여(grant-in-land) 방식으로 연방정부의 소유지를 Ohio주에 양여한 사례가 있음.¹³⁾
- 최초로 연방의회의 수권법에 의거한 사업으로서 현금을 지원한 사례는 1808년 국토경비대(National Guard)를 창설·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을 지원한 것임.
- 연방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급격한 증가
 - 현대적 의미의 연방정부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남북전쟁시 Morrill Act(1862)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보조금(grants)을 수혜할 주정부의 자격기준을 제도한 것이었음.¹⁴⁾
 - 1862년 Morrill법 이후 연방보조금은 점차 농업, 고속도로, 삼림, 보건 및 직업교육 등으로 확대됨.
- 1913년 미국헌법 수정 제16조에 의해 연방소득세가 인정되어 연

12) *Morton Grodzins*, 『The American System』, Chicago : Rand McNally, 1966, pp. 34~37 참조.

13) 북서부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들에게 연방정부의 소유지를 불하한 시초는 일반 대중교육(public education)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뒤이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wagon road), 운하 건설(canal construction), 수상 운송로(river navigation) 그리고 대학 설립 등을 위하여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양여한 사례가 있다.

14) 초기에는 농업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1857년 처음 제안되었을 때에는 James Buchanan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1861년 Morrill이 법안을 재차 발의하면서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도 함께 가르치는 대학기관을 설립하겠다고 개정안을 내었던 것이 남북전쟁과 맞물려 1862년 7월 2일 Abraham Lincoln 대통령에 의해 서명·통과되었다.

방정부의 재정기반이 확립되었고 주정부에 대한 지원은 토지양
여방식에서 보조금 교부방식으로 대폭 전환됨

- 연방보조금은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직
접 교부하는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¹⁵⁾
-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보조금과 관련하여 26개의 부처에 의해
1,0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중이고, 2004년 기준으로 4,000
억원 달러의 규모에 달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지원 중 약 60%가 公教育에 할당됨.¹⁶⁾

(2) 연방보조금의 지급절차와 조건

-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들은 일정한 연방정부의 법적 규제에 구속됨.
 - 사업조건(Program Condition) : 계획요건(Planning Requirement), 관
리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s), 감사기준(Auditing Standards) 등¹⁷⁾
 -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속적 조건(부관)
의 대부분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한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 재정
적·사업적 책임성(fiscal and programmatic accountability)을 확보
하기 위해 부가된 급부조건(conditions of aid)

15) 1942년에는 25%, 1952년에는 31%에 불과했던 정부간이전(주보조금 및 연방보조
금)의 지방정부 일반회계수입(Local Government General Revenue)의 비중이 1977년
에는 43%에 달하고, 세수의 42%를 상회하게 된 것은 연방직접보조금의 증대가 상
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J. Richard Aronson & John
L. Hilley**, 『Financ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 (4th Edition)』, The Brooking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6, pp. 72~73 참조.

16) **Daniel R. Mandelker/Dawn Clark Netsch/Peter W. Salsich, Jr./Judith Welch
Wegner**,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a Federal System, Cases and Materials (4th
ed.)』, 1996, p. 427.

17) **David R. Beam**, “Washington's Regulation of States and Localities: Origins and
Issues”, 『Intergovernmental Perspective』 Vol. 7 Issue 3, Summer 1981, pp.8~9 참조.

- 법적으로 포착되는 재정지원의 형식은 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정부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희망(신청)하고 이에 수반되는 조건에 따를 것을 결정하여 임의적인 계약체결로서 파악됨¹⁸⁾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 정부의 보조금(State Grants)은 주 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재화 또는 긍정적 파급효과(positive spillover)를 가진 재화의 제공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대체로 주 정부의 과세기반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소득탄력적이므로 보조금은 (주정부와 그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수직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¹⁹⁾
- 그러나 연방보조금에 대한 연방의 행정적 요구사항들이 중복적이고 과중하거나 상충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의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바 있고, 2009년에는 그 적용시한을 폐지하면서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3) 미 연방정부 보조금의 현황 및 구조

- 미국의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헌법상의 과제를 수행하고, 공교육, 치안, 도로, 상하수도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Major Role)을 담당함

18) *U. 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mproving Federal Grants Management -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An Assessment and Proposed Policies (A-53)』, ACIR, Washington, D.C., February 1977, pp. 2~5 참조.

19) *Richard Aronson & John L. Hilley*, 『Financ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 (4th Edi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6, p. 79.

- 연방정부는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Grants), 보증(Loans), 세금원조(Tax Subsidies) 등을 지원하여야 함
- 보조금은 소득보장(Income Support), 인프라(Infrastructure) 정비,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 등 공공정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연방의 재정지원은 세금감면, 세액공제, 비과세 등 조세지출(Tax Expenditure)에 의하여 이뤄지기도 함.
- 연방정부는 1984년 제정된 공법(Public Law 98-169)인 연방프로그램정보법(Federal Program Information Act)에 의거하여 연방지원프로그램에 관한 목록(CFDA :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에서 연방보조금 프로그램을 모두 수록하고 있음.²⁰⁾
- 보조금 신청인은 CFDA에 게재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하고, 응모조건에 따라 연방정부에 대해 스스로 책정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하고, 연방정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연방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함.²¹⁾
- 연방보조금제도의 운영절차²²⁾
 - 입법부의 승인 및 배정
 - 연방보조금에 대한 정보 공표

20) CFDA에 게재되는 연방지원프로그램은 2013년 12월 4일 기준으로 2,205개이다. <https://www.cfda.gov/?s=main&mode=list&tab=list>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 이 자료는 2013년 12월 4일 최종 업데이트된 자료이고, 각 부처별로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보건복지서비스부서(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464건,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270건,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252건,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126건, 건축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25건 등을 포괄하고 있다.

21) <https://www.cfda.gov/?s=generalinfo&mode=list&tab=list&tabmode=list&static=grants>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22) *Grants Policy Committe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Public Law 106-107 Initial Plan』, pp.10-11.



-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 등의 신청서 제출(준비)
- 선정(Award) :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기관 지원자의 실적이나 경쟁평가 후 선택된 기관 등에 지원결정
- 선정후 과정(Post-Award) : 일반적 행정요건과 비용원칙 등을 포함하여 각 프로그램에 맞추어 수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집행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각 부처의 감독 및 기술지원 등
- 보고(Reporting) : 재정집행성과 등 보고
- 감사 및 종결

(4) 연방보조금의 분류 및 종류

- 연방에서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일반기업, 개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비재정적 지원프로그램으로 구분 가능
 - 재정지원프로그램 : 공식보조금, 사업보조금, 특정 사용 직접지급, 무제한 직접지급, 직접 대출, 보장대출, 보험 등
 - 비재정적 지원프로그램 : 재산과 재화의 판매·교환·기부, 재산·시설 및 장비의 사용, 특별 서비스, 자문과 상담, 기술정보의 배포, 훈련, 불만의 조사, 연방고용 등²³⁾
- ① 공식보조금(Formula Grants)은 구체적인 계획(project)에 구속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행정활동에 대하여 법이나 행정규칙에 의해 미리 설정된 배분공식에 따라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 ② 사업보조금(Project Grants)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구비, 장학금, 연구보조금, 훈련보

23) 미국에서 재정지원의 유형에 대하여는 <https://www.cfda.gov/?s=generalinfo&mode=list&tab=list&tabmode=list&static=assistance>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참조.

조금, 실험실습보조금, 평가보조금, 계획보조금, 기술지원보조금, 조사보조금, 건설보조금 등이 있다. 연방보조금 중 사업보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③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직접 지급(Direct Payments for Specified Use)은 연방정부가 특별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사기업, 그리고 다른 사적 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혜자가 그 지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연방정부에 대한 용역 및 재화의 조달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 ④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직접지급(Direct Payments with Unrestricted Use)은 연방정부가 연방의 지원조건에 맞은 수혜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재정적 보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음. 퇴직, 연금, 그리고 보상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도 이에 해당됨.
- ⑤ 직접대출(direct loans)은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이자의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⑥ 보장대출(guaranteed / insured loans)은 연방정부가 채권자에게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제에 대한 보증에 동의를 해주는 프로그램임.
- ⑦ 보험(insurance)은 연방정부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손실에 대한 배상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의미함.

(5) 연방보조금의 결정 및 배분

- 특정보조금의 지출승인규제, 보조금의 특정성, 보조금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결정됨
- 보조금 총액의 결정방법 : 정부부처와 관리예산처(OMB)에서 요청하여 연방의회에서 확정되는 예산법에 따라서 확정됨

- 보조금이 계상되는 사업은 매년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프로그램 별로 경제동향이나 인구변동요인, 전년도 실적 등 통계수치를 가지고 산출하고, 관련된 프로그램(타부처 소관의 것도 포함)의 법적 근거 및 규율내용의 변경사항 등도 고려하면서, 각 부처별로 총액을 계상하여 예산관리처(OMB)에 제출함
- 예산관리처에 제출된 내용은 대통령의 예산교서에 반영되고, 연방 의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거쳐 심의·확정함
- 예산집행권한이 연방부처에 이관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게 됨

○ 보조금의 배분방법 및 고려사항²⁴⁾

- 연방보조프로그램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조금수급권리의 대상, 수준, 범위 등은 연방기관 또는 수급권자의 보조금 이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급가능한 범위”는 연방 보조금의 용도를 제한함.
- 공식보조금은 개별법령에 규정된 산술식에 의거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배분되고, 연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배분공식을 정함.
- 사업보조금은 연방 의회에서 각 부처에게 재정지원을 위하여 배분될 자금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함

<표> 배분의 성질에 따른 분류

	공식보조금	사업 보조금
지원방식	계속적 지원	특정목적 지원, 한시적 사업
자금결정자	연방의회	연방부처

24) 이에 대하여는 **CBO**, 『Federal Grant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oncepts for Legislative Design and Oversight』, 2000, pp. 86~95 참조.

- 공식보조금은 연방의회가 재정지원결정의 공식을 정하거나, 최소한의 공식 중 변수를 토대로 하여 보조금펀드를 수급자격자에게 배분된다. 그러나 그 자금은 다른 형태로(예컨대 사업보조금으로서) 배분되는 경우도 있음.
- 공식보조금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저소득자인구, 장애자의 수, 기타 과밀주택 수 등이 있는데,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수급권자들이 신청한 자료의 수치뿐만 아니라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서비스국 또는 노동통계국의 통계 자료를 참조하여 결정함.
- 자금배분공식의 변수에 대하여는 개별 수급권자가 받게 되는 재정지원의 구체적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연방의회에서도 상당한 고려 및 논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회가 법률로 자금배분공식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음.²⁵⁾
-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비율(보조율)은 프로그램별로 달리 규정되는데, 100% 연방자금에 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주에게 상당한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²⁶⁾

25) 공식보조금의 배분공식의 변수로는 1) 인구비율의 공정한 분배 (Fair Share based on Population), 2) 과세노력에 기초한 공정한 분배 (Fair Share based on Tax Effort), 3) 서비스에 대한 욕구 (Needs for Services) 4) 재정균형 (Fiscal Equalization), 5) 실제 총비용 (Actual Amount of Cost) 그리고 6) 목표설정과 연방보조 (Targeting and Federal Aid)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http://www.grants.gov/web/grants/home.html;jsessionid=99spSd7bnvqsRHsykDn11MLGNkv7hLnDkCNj4l6LbqkmgyhFXNLY>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참조.

26) 93.778 Medical Assistance Program에 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fd.gov/index?s=program&mode=form&tab=core&id=cab21c2834d6923505113f1b9dc1e05d>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 의료보조(Medic-aid)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연방보조율은 50~83%로 규정되어 있고 그 비율은 각 주별로 상이하다. 자금분배에 사용되는 지표(변수)는 각 주의 의료지원비, 3년간 주의 지역주민의 평균 1인당 소득 등이다.

(6) 지출수준의 규율방식 :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

○ 매칭 요구(Matching Requirement)

- 보조금사업 중에서는 연방보조금을 받은 조건으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지출이나 물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매칭요구를 통하여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존 보조프로그램 사업의 자금을 무제한적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²⁷⁾
-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을 지향하는 측면이 있음.²⁸⁾

○ 유지노력요구(Maintenance of Effort)

- 유지노력요구(MOE)는 연방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서 보조금을 받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특정 분야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기) 이전의 재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함.
- 수급자에게 유지노력요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수령하기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중복사업을 정리하여 재정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연방보조금 총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

27) 이와 반대로 매칭요구를 통하여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보조프로그램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담률이 점차 상승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28) 고속도로건설계획프로그램(Highway Planning and Construction)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州間 고속도로 건설프로젝트에 관하여 연방정부가 9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각 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20.205 Highway Planning and Construction 웹사이트 <https://www.cfda.gov/?s=program&mode=form&tab=step1&id=e84a0c173c3cbb533696ab104af0c788> (2013. 12. 5. 최종방문) 참조.

(7) 보조금에 관한 (헌)법적 규율

○ 재정지원의 헌법적 근거

- 연방헌법 제1장 제8조 제1항 “일반복지목적을 위하여 조세, 관세, 수입세, 소비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연방의회에 대하여 일반적 과세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출(승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연방정부가 직접 농업, 사회보장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개발사업, 의무교육, 도로건설 등과 같은 주 정부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정당하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음.

○ 법률에 의한 재정지원규율의 구체화

- 연방보조금제도는 국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연방정부는 보조금프로그램의 성과를 판단하여 그 프로그램을 유지 내지 존속시킬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함.
- 연방의회는 연방부처가 그 성과를 계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GPRA*)을 1993년에 제정하였음.
- 미 연방의회는 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을 제정하여 연방보조금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8년 적용시한의 한시법).
- 기존사업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의 보조금 프로그램과 연방자금이 혼재하게 되어 그 성과를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 미 연방의회는 2006년 9월 연방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FFATA*) 통과시키면서 동법에 의거하여 연방보조금, 용자, 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²⁹⁾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결국 2009년 동일한 명칭의 법률인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을 통하여 과거 1999년의 한정된 적용시한(8년)을 철폐하고, 보다 강화된 법적 규율을 담고 있음.³⁰⁾
- 미 의회는 1977년 연방 보조금 및 협력계약에 관한 법률(*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of 1977*)을 통과시키고 재정지출 수단 내지 형식을 계약(*contract*), 보조금(*grant*), 협력계약(*cooperative agreement*) 등 3가지로 단순화하고자 한 바 있음.³¹⁾
- 그 이유는 1970년대 당시 미 정부기관들이 경쟁입찰 등 정부조달의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assistance agreement*)에 의거하여 자의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29) 이 사이트의 명칭은 www.USAspending.gov이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책임은 관리예산처(OMB)장이 부담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는 미 정부의 공식 사이트로서 각 항목(계약금액, 보조금액, 용자금액 등), 계약대상, 보조금을 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지역별로 재정지원사항을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하위 수혜자(sub-awardee)에 관한 정보도 수록하도록 되어 있다.

30) 그 사이에 2008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률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8*)도 제정되었으나, 이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는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s/111/s303/text> 참조.

31) 미국 성문법전(U.S.C.) Title 31(Money and Finance) 제63장 “조달계약, 보조금 그리고 협력계약의 활용(*Using Procurement Contracts and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s*)”으로 규율되어 있는 내용은 http://www.law.cornell.edu/uscode/pdf/uscode31/lii_usc_TI_31_CH_63_SE_6301.pdf 참조.

- 관리예산처 OMB 지침(Circular) A-102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보조금 및 협력계약”에 따르면, 이는 선정 이전의 정책 (*Pre-Award Policies*), 선정 이후의 정책 (*Post-Award Policies*) 그리고 사업종료 이후의 정책(*After-the-Grant Policies*)으로 구성되어 있음.³²⁾
- 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법 제2조 : 이 법은 다수의 연방보조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정적 요구사항들이 중복되고 과중하거나 상충적이기 때문에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단순화하여 개선하고자 함
 - 법 제3조 :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의 효과와 성과를 개선하고, 연방재정지원에의 지원 및 보고 요구를 단순하고, 대중에게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간의 조정을 강화하고자 함.
 - 법 제5조 (a)항 : 각 연방정부기관의 의무

- ① 연방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관리, 보고의 절차의 단순화
- ② 관할 부처 상호간의 능동적 참여
- ③ 공통적 지원 및 보고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관 활용
- ④ 각 부처의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각 부처별 공무원의 지정
- ⑤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자의 전자적 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 ⑥ 연방재정지원의 수혜자에게 보고요청에 대응하는 적시에 충분한 정보 제공
- ⑦ 정부성과법에 의거한 각 부처의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수혜자의 협력

32)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omb/circulars/a102/a102.pdf>



- 법 제6조 : 예산관리처(OMB)의 의무

- ① 단체를 위한 연방재정지원행정관리 절차와 보고요건의 단순화
- ②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 정보수집 및 자료공유 : 연방부처와 주정부 그리고 지자체 상호간 협력
- ③ 연방재정지원 수급권자로부터의 연방부처가 수집한 정보의 시의성, 완전성, 질적 개선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재무담당책임관(*the Chief Financial Officers*)은 보조금관리위원회(*the Grants Management Committee*)가 동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 상호간의 보조금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 예산관리처의 재무담당책임관 (*CFO: Chief Financial Officers*)과 보조금관리위원회 (*GMC: Grants Management Committee*)가 부처 상호간의 조정업무를 담당하지만, 의회의 보조금관리위원회(*GMC*)가 연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업무를 최종적으로 관장함.³³⁾

- 단계별 절차 및 주요내용

- ① 연방보조금에 대한 정보 공표
 - 보조금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신청서류에 대한 접근성 개선
 - 담당 부처에 대한 완전한 정보제공 (이름, 전화번호, e-mail주소 등)
 - 연방재정지원목록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³⁴⁾에 정보 수록
 - 정보를 고지함에 있어 통일된 양식과 명확한 언어 사용

33) 보조금관리위원회는 4개의 실무조직(*working group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보조금 선정이전(*pre-award*), 선정 이후(*post-award*), 감사·감독(*audit oversight*) 그리고 전자적 과정(*electronic process*)별로 실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외에 실무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을 감독하는 ‘일반정책 및 감독팀’이 존재한다.

34) 이에 대하여는 <https://www.cfda.gov> 참조.

- 지원신청을 준비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기에 충분한 시간 제공
-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명시
- 비용분담이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인이 되는지 여부 명시
- 지원서제출 및 갱신보고 시기에 시차를 둬

② 지원신청(*applications*)

-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서 표준양식 활용
- 유사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공통화
- 보조금 신청 및 지원서 제출정보 축소
- 예산요구서 양식 표준화
-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통지
- 지나치게 자세한 사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증명서 및 확인서 양식의 표준화
-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정부, 지자체, 민간인 등이 온라인 지원

③ 선정(*Awards*)

- 선정과정에서 표준화된 양식 활용
- 선정시 내부적으로 일관된 기준 내지 요건 마련
- 신청인이 지원서를 제출하는 시점과 자금지원시점 사이의 기간 단축
- 적시에 탈락을 고지하고 탈락이유를 제시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선정 여부에 대한 고지

④ 집행실적 보고(*Reporting*)

-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되고 간소화된 집행실적 보고서 양식 적용
- 보고서 제출기한을 수령시점으로부터 90일로부터 120일로 연기
- 보고요건들을 통합하고 간소화
- 동일한 보고서를 여러 곳에 보내도록 부담지우지 않도록 함

⑤ 지급(Payment)

- 지급체계를 간소화
- 통합된 지불체계를 표준화

⑥ 계약조건 및 일반행정상의 조건

(*Terms and Conditions and General Administrative Requirement*)

- 계약조건의 표준화
- 예산과목의 변경에 대한 신축성 강화
- 자금이월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

⑦ 비용원칙(Cost Principles)

- 배분방법 간접비용에 대한 해석 등이 일관성을 갖도록 함
- 연방의 비용원칙들간의 일관성 증진 혹은 통합
- 보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축소

⑧ 감사(Audit)

-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감사에 대한 더 좋은 정보의 제공
- 하나의 감사과정을 요약한 문서개발
- 연방 정부부처들이 수급자가 아닌 연방회계검사원 (*Federal Audit Clearinghouse*)에서 자료를 구하도록 함
- FAC과정을 단순화

○ 2006년 연방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법률 (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 이 법률 (FFATA ; Public Law 109-282)은 2007 회계연도부터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 단체, 협회 등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의회입법이다. 이에 의거하여 2007년 12월 “USA spending (<http://www.usaspending.gov>)” 이라는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이는 관리예산처(OMB)에서 유지·관리한다. 이 법안은 2006년 4월 6일 상원의원 Tom

Coburn, Barack Obama, Tom Carper 그리고 John McCain이 발의하였고, 두 차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한 동 법안을 폐지하려는 문제제기를 극복하고 2006년 9월 7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동년 9월 26일 당시 대통령 George Bush가 서명·공포하였다. 그리고 2008년 6월 3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후속 입법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Federal Spending Act of 2008*)을 발의하여 통과시킴.³⁵⁾

- 주요내용 :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늦어도 2008년 1월 1일까지, 관리예산처는 동법 조항과 2002년 전자정부법 제204조 (the E-Government Act of 2002 <Public Law 107-347; 44 U.S.C. 3501 참조>) 그리고 연방조달계약정책국에 관한 법률 (*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41 U.S.C. 403 et seq.>*) 등에 의거하여 일반 대중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검색 웹사이트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각각의 연방의 재정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A)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기관)의 명칭 (*the name of the entity receiving the award*);
- (B) 재정지원의 액수(규모) (*the amount of the award*);
- (C) 거래유형(보조금, 융자, 계약 등), 지원기관, 북미산업분류체계코드 또는 연방내의 지원번호(가능하다면) 프로그램 기초자료 그리고 개별의 재정지원 목적 등에 대한 개략적 설명;
- (D)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기관)의 소재지, 재정지원에 기초하여 사업성과를 내는 주요장소;

35) *Garrett L. Hatch*, 『The Feder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 Implementation and Proposed Amendments』, CRS Report for Congress, 2008. 10. 22, pp.10~15 참조.

(E)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기관)의 특별한 표지 그리고 만약 다른 단체(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예컨대 母子회사), 재정지원을 수령한 단체를 소유하고 있는 단체(기관);

(F) 관리예산처에서 조건을 붙여서 구체화시킨 관련 정보들

-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이 법에 따르면 연방보조금(federal grants), 융자(loans), 계약(contracts) 그리고 다른 어떤 형태의 재정지원이든지 수령하게 되면 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즉, 재정지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면 시민단체 등 감시자 집단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게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될 프로젝트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정부에서 재원을 지출 내지 분배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단계별 실현구조 : 재정정보의 공개대상 및 적용범위 확대³⁶⁾

36) 첫 번째 단계는 2008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웹사이트인 USA spending (<http://www.usa-spending.gov>)에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1단계 실행과정에서의 적용대상은 기업(corporation), 협회(associations), 합명회사(partnership), 1인 회사(sole proprieto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유한책임합명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주정부(states) 그리고 지방자치단체(localities)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2009년 1월 1일까지) :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보조금을 수령받은 자를 통하여 자금을 지급 받게 되는 사람(subgrantees) 그리고 하도급계약자(subcontractors) 등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총 수입이 30만불 이하인 단체 혹은 재정지원을 수령한 개별 사업자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다시 다른 사람 혹은 계약자에게 이전한 경우(subawards)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 실현과정상의 문제 :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 및 막대한 운영비용
- 200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 목적 : 연방재정지원(Federal Financial Assistance)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을 증진하고, 연방재정지원(FFA)의 실제 적용과정상의 보고사항 등을 단순화하며,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발전시키고 그러한 서비스들의 전달과정을 올바르게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률이 실효되었으므로 재수권(reauthorize)함.
 - 관리예산처장(Director of OMB)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유지·관리할 책임을 부담함.
 - 연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기관)들은 자유롭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방보조금을 검색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예산처장은 이 사이트에서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내역을 추적하며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인증사항과 보증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어야 함.
 - 관리예산처장의 책임 및 직무관할
 - 의회에 대한 개선사항 보고의무³⁷⁾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거래금액인 2만 5천불 이하인 경우와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경우는 2008년 10월 1일까지 적용을 면제하거나 제외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37) 관리예산처장은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 15년 동안 격년으로, 의회에 대하여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률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개선되었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후속 보고서들은 반드시 연방정부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개선사항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리예산처장은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 원활한 보조금 신청을 위한 신청양식 및 웹 시스템의 개선³⁸⁾
- 각 연방정부 부처의 보조금 관련 업무의 분장 및 조정³⁹⁾

(8) 연방보조금의 구체적 사례

1) 공식보조금

○ 의료보조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Program : Medicaid)⁴⁰⁾

- 보건복지부에 의해 운영되는 동 보조금사업은 2011 회계연도 기준 2,958억달러이고, 2012년도 기준 2,655억 달러 그리고 2013 년도 기준 2,775억 달러로 추정됨.
- 프로그램의 목적은 보조금 수급자격이 있는 개인들⁴¹⁾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것임.

의회에 전략적 계획(a Strategic Plan)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연방재정지원(FFA)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집행하고 보고하는 방식 등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거나 그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의 목적들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아닌지에 따라서 지켜야 할 조건 내지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적 계획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들, 시한 그리고 연방의 재정지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역량(electronic capacity)을 완벽하게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거래비용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8) 일반인들이 신청하고 보고하는 양식을 표준화하고 요구조건 등을 규정하고, 연방정부의 행정체계와 주정부의 행정시스템 상호간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사항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는 상호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메카니즘)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증 내지 보증을 받는 방식을 개선하고, 연방재정지원(보조금, 융자 등)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기 다른 다양한 시스템들을 가급적 줄여나감으로써 단순화하여야 한다.

39) 각 연방기관들은 OMB에서 전략적 계획을 제출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OMB의 전략적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는 실행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은 OMB의 전략적 계획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15년간 어떻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2년에 한 번씩 관리예산처(OMB)에 보고하여야 한다.

40) 93.778 Medical Assistance Program에 대하여는 <https://www.cfda.gov/index?s=program&mode=form&tab=core&id=cab21c2834d6923505113f1b9dc1e05d>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참조.

41) 수혜자들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각주정부별로 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로서 저소득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 등과 저소득 임산부 및 자녀 등이다.

- 재원배분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XIX)에 의해 배분되고, 주정부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음.⁴²⁾
- 고속도로계획 및 건설(Highway Planning and Construction)⁴³⁾
 - 동 보조금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운영되고, 이는 이제 공식보조금(Formula Grants)와 사업보조금(Project Grants)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
 - 보조금의 규모는 2011 회계연도 기준 395억 달러, 2012년도 기준 381억 달러 그리고 2013년도 기준 305억 달러로 추정됨.
 - 동 보조금의 목적은 각주의 교통담당부처들에게 통합되고 상호 연결되는 운송체제의 계획과 건설을 하는데 재정적인 보조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 공식보조금으로 운영되나 일부는 사업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재원배분은 대부분 공식에 의해 이루어짐.⁴⁴⁾
- 국가학교급식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⁴⁵⁾
 - 동 보조금은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의해 운영됨.
 - 보조금 규모는 2011 회계연도 기준 103억 달러, 2012 년도 기준 107억 달러 그리고 2013 회계연도 기준 114억 달러로 추정됨.
 - 동 보조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에 현금 및 기부를 통하여 보조하는 것과 국내 농산물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

42) 연방은 의료서비스비용의 50~83%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별 배분에는 각 주의 의료지원 세출규모, 3년 평균 각주의 1인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43) 20.205 Highway Planning and Construction. 이에 대하여는 <https://www.cfda.gov/?s=program&mode=form&tab=step1&id=e84a0c173c3cbb533696ab104af0c788>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참조.

44) 재원배분에 대한 규율은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SAFETEA-LU),, Public Law 109-59, 23 U.S.C 101. 참조.

45) 10.555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에 대하여는 <https://www.cfda.gov/index?s=program&mode=form&tab=core&id=e8e78e131dd3b1b8f62b08b703df4868>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참조.

- 지역개발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state program)
 - 동 보조금은 주택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e and Urban Development : HUD)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식보조금
 - 목적 : 저소득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적정한 삶의 환경 및 경제적 기회제공 등을 통한 도시지역의 개발 그리고 저소득가정 혜택, 빈민굴화(slum)의 방지, 지역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등 긴급한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충족이라는 국가적 목적(National Objectives)에 합당함.
 - 근거법령 : 주택지역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74)⁴⁶⁾

2) 사업보조금 (PROJECT GRANTS)

- 농업연구에 대한 경쟁적 보조금⁴⁷⁾
 - 농업의 주요쟁점들에 대하여 국가적, 지역적, 多州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나 교육 등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의해 운영되는 보조금.
 - 2007년 기준 그 보조금 규모는 1억 7천만 달러였으나, 현재는 WTO 규약에 기초하여 지원액이 전액 모두 삭감되었음.

46) 보조금의 수혜자는 주택지역개발법 제8조에서 정한 저소득가정에 해당되는 자들을 의미하고, 동 보조금의 배분은 주택 및 지역개발법의 106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두 공식이 활용된다. “공식 1”은 인구(25%), 빈곤의 정도(50%), 밀집의 정도(25%)의 지표를 합산하여 산출되고, “공식 2”는 인구(20%), 빈곤의 정도(30%), 주택의 연한(50%) 지표를 합산하여 산출되는데, 이 중에서 많은 액수를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한다.

47) 10.206 Grants for Agricultural Research Competitive Research Grants에 대하여는 <https://www.cfda.gov/?s=program&mode=form&tab=step1&id=9c65ee04a1ada656181bf86083ad799c>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참조.

- 과학연구자 지원 프로그램(STAR Fellowship Program)⁴⁸⁾
 - 환경보호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 2007 회계년도 기준 750만 달러에서 대폭 증가하여 2011 년도 1050만 달러, 2012년도 1390만 달러 그리고 2013년도 기준 1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목적은 환경관련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으로서 환경관련법령에 의해 지원되고, 수혜자는 개인, 학생, 졸업생, 실습생 등임.

2. 일본의 재정지원수단

(1) 보조금에 대한 개관

- 일본의 보조금은 정부의 특정한 사무·사업에 대한 공익성을 부여하여 그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상교부하는 금전적 급부
- 일본의 재정법에서 국고보조금은 사용용도가 자유로운 ‘일반보조금’과 사용용도가 제한된 ‘특정보조금’의 두 형식으로 구분함.⁴⁹⁾
- 보조금 지급주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방으로부터 급부되고 있는데, 그 형식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정부와 관련된 공공기관 등에서 급부되는 3가지 유형의 보조금으로 구분됨.
- 보조금의 교부처는 지방자치체,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⁵⁰⁾

48) 66.514 Science To Achieve Results(STAR) Fellowship Program은 <https://www.cfda.gov/?s=program&mode=form&tab=step1&id=f2af56397d54f867364907585086b740>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참조.

49) 齊藤忠雄, “國庫支出金の再編過程”, 日本財政法學會 編, 『地方財政の變貌と法』, 勁草書房(東京), 2005, 91쪽 참조.

50) ‘보조금’에 관한 표현이 들어 있는 일본의 법령을 찾아보면 독립행정법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 전체 보조금의 70~80%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원은 일반회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일반회계상 지원형식은 交付金·補助金·負擔金·補給金·委託費 5가지로 구성됨.⁵¹⁾
- 현행 일본의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1. 보조금, 2. 부담금, 3. 이자보급금, 4.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가지를 열거함.
- 국고보조금의 지급목적은 다양한데, 대체로 사양산업의 구제와 첨단산업의 조성 등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음.⁵²⁾

(2) 보조금 교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 규제적 행정행위와 달리 수익적 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계약의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에 그 효력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 법령은 불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계약의 체결절차를 규제하는 법규범이 존재할 수 있음.
- 그러나, 법령 또는 지침에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부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음.⁵³⁾
- 보조금교부에 법률의 근거를 불요한다는 것이 일본학계의 통설의 입장이므로 그 법규정은 근거규범으로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자금교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서 그 절차를 제한하는 목적에서 채용된 규정(규제규범)이라고 해석함.

51) 宮本憲一 編, 『補助金の政治經濟學』, 朝日新聞社, 1990, 23쪽 참조.

52) 이외에도 일본의 특유한 정치여건상 보조금은 집권당이 선거과정에서 득표를 위해서 또는 중앙부처의 이해관계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

53)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의 해석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적정화법이 있고, 거기에서는 신청에 대하여 교부결정이라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제6조).

- 그리고 경쟁입찰 방식을 법률이 원칙으로서 요구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행정재량(입법권에 의한 행정에 판단을 유보하는 것)을 긍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에서 논의되는 재량(재량행위)은 행정계약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본에서는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규제규범의 수권에 의한 행정행위가 교부결정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보조금적정화법에 상당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행정규칙이 널리 사용됨.
 - 제1절 :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급결정은 법령의 수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견해
 - 행정규칙에서 교부결정이란 문언이 있어도 그 법률관계는 행정계약에 불과함
 - 일부 판례가 교부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이용을 인정해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항고소송을 확대하여 이용하는 것임
 - 제2절 : 예산을 준법률로 파악하여 그 수권에 의하여 행정규칙이 발령된 것으로 보는 견해
 - 요강은 예산구체화법으로서 존재하고, 그 요강에 기초한 지급결정은 예산의 수권에 의한 것으로서 행정행위를 해석함.
 - 예산의 규율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포괄적 수권이 허락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인지 의문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수준에 있어서 보조금교부에 대하여 지급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

정하여야 함. 즉, 조례에 교부결정이 명시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룰 수 있고, 명시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혹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요건에 따라서 급부를 구할 수 있음

(3) 출연금에 대한 검토

- 일본의 법령 중에서 ‘출연’이라는 표현은 단 1건 등장하는데, 이는 『화재도시차지차가임시처리법(罹災都市借地借家臨時処理法) <昭和21年8月27日法律第13号>』 제16조에서 “법원은 당사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할당을 받지 못한 자 또는 현저하게 불이익한 할당을 받은 자를 위하여 현저하게 이익한 할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상당한 출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재정법상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출연금 개념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타방 당사자로의 재산이전’이라는 민사법적 의미를 가진 개념에 그치는 것임.
- 따라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출연금 개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재정지원은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음.⁵⁴⁾

3. 독일의 재정지원수단

(1) 독일 기본법(헌법)

1) 104a조 3항

- 자금을 지원하고 주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 연방법률은 자금지원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에 의해 부담됨을 정할 수 있

54) 일본의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일반론적인 설명은 조일윤 · 김세진, 『지방재정 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VI) - 일본 - 』, 한국법제연구원, 2008 참조.

다. 지출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연방이 부담함을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어야 한다.

2) 관련 조문 : 104b조 1항

- 기본법이 연방에게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한, 연방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음 각호의 특히 중요한 투자를 위하여 주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체경제적인 균형에 대한 장애의 방지 또는
 2. 연방지역내에서의 상이한 경제력의 조정 또는
 3.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투자.

(2) 기본법의 구체화

- 1) 예산법의 원칙에 대한 법률(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Länder: HgrG) 제14조의 출자금(증여금; 기부금; Zuwendung) 규정
- 2) 연방예산규정(Bundeshaushaltsordnung: BHO) 제23조의 출자금(증여금; 기부금; Zuwendung) 규정
- 3) 경제의 안정 및 성장의 촉진에 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StabG 또는 StWG) 제12조의 보조금(Subvention)
 - 1항 “연방행정 이외의 특정한 임무를 위해 주어지는 연방자금, 특히 재정지원은 동법 제1조에 위반되게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 2항 “동조 1항의 재정지원에 대해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연방 예산안을 통해 매 2년마다 감독을 받아야 하며, 특히 재정지원은 다음의 항목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기업 또는 경제분야의 유지.

2. 기업 또는 경제분야가 새로운 조건에 대한 적응(현실화) 및
 3. 기업 또는 경제분야의 생산성 발전과 특히 생산방법의 지도를 통한 성장의 촉진
- 본 규정의 재정지원(Finanzhilfe)은 연방의 보조금(Subvention)개념으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사기업과 경제분야를 위한 급부(또는 지원: Leistung)에 상응하는 법률적 위임으로 구체화되고 집중됨.
 - 연방재정청이 행하는 지원이 동법 제12조 2항 각 호의 내용, 즉, 기업과 경제분야에 대한 유지, 적응 및 생산성진흥을 위한 연방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닌 그 밖의 재정 지원으로 이해됨.
 - 보조금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연방재정청이 표명하고 있는 연방의 재정지출에는 기초연구(Grundlagenforschung)의 지원이나 연방기업에게 주어지는 교부금(Zuweisung)과 자본증액 및 연방보증 등이 있고, 특히 이러한 범주화가 용이하지 않은 사례로는 조세 감면이 있음.⁵⁵⁾
 - 이와 같이 “경제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촉진에 대한 법률” 12조에서 보조금의 개념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지원이 동법상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심사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확장될 수도 있음을 암시함.
 - 보조금 개념의 재정지원은 “경제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촉진에 대한 법률(StabG)”의 대강의 개념정의와 유형을 두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따로 두고 있음.

55) 이는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독일연방재정청), 23. Subventionsbericht (제23차 보조금보고서), 2009-2012, 8쪽 이하의 견해를 따른 것임. 독일연방재정청의 보조금보고서의 보고대상이 되는 보조금개념은 1967년 StabG이 제정된 이래 개정되지 않고 확정되어 있다.

- 2012년을 기준으로 보조금에 의한 재정지원의 법적근거는 법률이 13개 제정되어 있어 전체 재정지원의 22.8%를 차지하며 법규 명령, 준칙, 계약이 39건으로 68.4%, 매년 예산결정에 의한 것이 5건으로 8.8%를 차지함.
-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는 대체로 행정청에 의해 발령되는데, 이는 기본법 104a조 및 그 관련규정의 해석에 따라 연방과 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3) 재정지원의 형식

- 보조금(Subvention)의 형태 : StabG 제12조 2항 각호
- 예산지원(Hauhaltmittel)의 형태
 - (특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보조금(Zuschuss)
 - 채무상환지원(Schuldendiensthilfe)
 - 자금대여(Darlehen)
 - 조세감면(세금감면: Steuervergünstigung)⁵⁶⁾

(4) 재정지원의 사례별 검토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Maßnahmen zur Förderung kleiner und mittlerer Unternehmen: KMU)
- 특정산업분야 지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광산업 보조금)
- 주택사업 중 환경친화적 주택과 양로원에 대한 장려 및 지원⁵⁷⁾

56) 조세감면은 2012년 기준으로 103건 모두 법률로 정하고 있다.

57) 특히 이산화탄소절감을 실현하는 재건축영역의 “에너지효율적 재개발(Energieeffizient Sanieren)” 장려 프로그램은 독일재건은행(KfW)의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직접적인 장려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연방과 독일재건은행 간의 “CO2재건축프로그램”의 계약에 두고 있다.



- 중소도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화를 위한 원조
- 토지연금
 - 산업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농지를 다른 사업을 위해 매도 또는 임대한 농민에게 직접 주는 보조금(Zuschüsse)
 - 근거법률 : “농업조정축진을 위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der Einstell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werbstätigkeit: FELEG)” 및 이와 관련하여 고령농민보호에 대한 법률(Gesetz über die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ALG)” 125조 및 사회법전 제 6권 (SGB VI)의 99조 이하
-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보조금
 - 구 미네랄오일세법(Mineralölsteuergesetz) 2006. 6. 15. 실효
 - 바이오연료쿼터제법(Biokraftstoffquotengesetz) 2007. 1. 1. 발효
 - 2013년까지 순수바이오연료사용차량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부여
 -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산업분야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제고
 - 조세감면정책은 연방정부의 경제성장촉진법(Gesetz zur Beschleunigung des Wirtschaftswachstums)의 과세책정 내용과 관련
- 도시건축진흥(촉진)(Städtebauförderung)을 위한 연방의 재정지원
 - 기본법 104b조 1항의 내용을 추가로 구체화
 - 지방자치단체(Gemeinde)는 주로 지방의 경제와 관련된 기반시설(인프라) 및 공공장소의 가치를 제고하여야 하는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도시건축촉진자금을 사용함.
 - 근거법령 : “지역경제구조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GRW)”

- 대여(Darlehen)의 경우는 목적구속적 보조금(Zuschüsse)와 함께 연방예산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의 형식으로 인정되지만, “경제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촉진에 대한 법률” 12조의 보조금 개념의 의미에서의 대여는 오늘날 계속적으로 그 활용빈도가 줄어들고 있음.⁵⁸⁾
 - 근해어업(Kutterfischerei)에 대한 대여금 지원
 - 법적 근거 : “해상어업에서의 투자촉진을 위한 교부금지원을 위한 준칙(IRS-BMELV)”
 -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에 대한 법률” 12조 소정의 적응(현실화) 보조금의 유형에 속함.
 -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2011년에만 0.3백만유로가 지원되었을 뿐이며 연방재정청은 수요부족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연방군의 가족에 대한 주택복지지원(Maßnahmen der Wohnungsfürsorge für Angehörige der Bundeswehr)
 - 보조금과 채무관계지원 및 대여의 형태가 결합되어 나타남.
 - 주택건축보조금, 세제지원, 자금대출 등의 패키지 지원.

4. 영국의 재정지원수단

(1) 개요

- 영국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법령은 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⁵⁹⁾
- 동법상 영국의 보조금의 종류는 크게 세입지원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 교통교부금(Transport Grant), 추가 보조금 (Addi-

58) 독일연방재정청의 제23차 보조금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의미의 대여에 의한 재정지원은 1퍼센트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59) 이에 대하여는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8/41/contents>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참조.

tional Grant), 기타 보조금(카운슬 세 보조금 [Council Tax Grant] 및 특별보조금 [Special Grant])으로 나뉜.

- 중앙정부는 매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재정합의(Local Government Finance Settlement)⁶⁰)를 도출함.

(2) 세입지원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

- 근거 법령 : 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78-84C조.
- 이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재정합의에 포함된) 지방정부재정보고서 (Local Government Finance Report)⁶¹)를 작성하여 하원의 승인을 받음.

(3) 추가 보조금 (Additional Grant)

- 근거 법령 : 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85-86조.
- 지방정부재정보고서의 승인 이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각 부처의 장관이 재무부의 동의를 추가보조금을 결의할 수 있음.
- 이 역시 별도의 재정보고서의 작성 및 하원의 승인이 요구됨.

(4) 교통 보조금(Transport Grant):

- 근거 법조문: 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87-88조.
- 교통 관리에 관한 지출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조금.

60) 2013~2014년도 지방정부재정합의(Local Government Finance Settlement 2013/14)에 대하여는 <http://www.local.communities.gov.uk/finance/1314/settle.htm#Settle>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참조.

61) 2013~2014년도 지방정부재정보고서(Local Government Finance Report 2013/14)에 대하여는 <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hc1213/hc09/0948/0948.pdf>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참조.

(5) 기타 보조금(Other Grants):

- 카운슬(지방)세 보조금(Council Tax Grant): 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88A조
- 특별보조금 (Special Grant): 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88B조
- 이상의 기타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 방법은 지방재정합의(Local Government Finance Settlement)에 포함됨.

IV.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1. 재정제도 및 재정여건의 변화

- 비교법적 연구의 유의점
 - 외국법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 개념 및 용례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의와 적용범위를 살펴서 번역하여야 함.
 - 일부 견해⁶²⁾에 의하면 grant를 ‘출연’ 그리고 subsidy를 ‘보조’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grant는 그 개념상 정부가 민간부문과 준정부기관(공공기관) 등을 불문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subsidy는 정부가 민간부문(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비대가적 경상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grant는 보조금으로 해석하고, subsidy는 (국가가 민간기업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62) 옥동석, 『공공기관의 출자·출연·보조제도의 합리화 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탁과제, 2008, 5쪽 참조.

- WTO와 FTA 체제의 출범 및 확산
 - 민간부문에 대한 장려금(subsidy)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고, 보조금(grant)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보조금의 목적과 대상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조건을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성과달성 등을 관리하고 있음.
- 국가회계법의 개정을 통한 2001 GFSM (IMF) 회계기준의 채택
 - 예산과 관련된 재정법령과 회계법의 관계에 의거하여 GFSM의 재정수입분류와 재정지출분류에 대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성.
- 재정수입의 측면
 - 재정수입은 조세수입(tax revenue), 사회보험료(Social Contribution), 보조(grants) 그리고 기타수입(other revenue)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보조(grants)는 공공부문(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다른 일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비강제적 경상이전을 의미한다.
 - 이를 분류할 때에는 어느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는가에 따라 외국정부의 보조금 (grants from foreign governments), 국제기구의 보조금 (gran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그리고 다른 국내 정부기관의 보조금(grants from other government units)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즉, 정부회계기준상 (민간부문⁶³)에 대한 장려금(subsidy)⁶⁴은 재정수입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63) 이는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도 포함된다. IMF의 2001 GFSM(정부회계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의 자체적인 수익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보지 않고, 수익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부채 등을 산정하는 기준 내지 대상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64) 장려금은 민간부문(기업)에 제공하는 무상 또는 비대가적(unrequited) 경상지급으로서 기업의 생산수준, 생산물의 판매가격 또는 기업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 재정지출의 측면

- 재정지출분류에 따르면 grant(보조금) 그리고 subsidy(장려금)에 대한 회계항목이 달리 설정되어 있음.
- 재정지출은 피용자의 보수(임금), 재화와 용역의 사용료, 고정자본소비(감가상각), 이자, 보조금, 장려금, 사회적 급여, 기타비용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보조금(grant)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정부에 대한 보조금, 국제기구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다른 일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수익률이 50%미만인 공기업 등 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뉘게 되고, 장려금(subsidy)은 (수익률이 50% 이상인) 공기업에 대한 장려금과 민간기업에 대한 장려금으로 구분되고 있음.

2.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

- 국가의 재정지원수단에 대한 규율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됨.
- 미국과 일본에서는 grant(보조금)에 대한 일반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개별적인 단행법령 또는 지침 등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수단을 규율하고 있음.
- 이러한 재정여건 및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의 2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⁶⁵⁾
 - 첫째, 기존의 재정지원수단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규율을 마련하여 재정지원과 관련된 법체계(소위 ‘출자·

65) 출자와 용자는 지분 내지 채무를 확보·회수하는 과정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규율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출연과 보조에 집중하여 진행시키고자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출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원적으로 규율하는 방법)를 정비하는 방안

- 둘째, 재정지원수단을 보조금으로 일원화하고 출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공사업 등을 수행하고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특정하여 기존의 출연금 제도의 특성(출연기관의 자율성과 출연금 집행의 탄력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출연금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과 통제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법제에 따른 관리의 틀 내에서 단계적으로 부관 내지 조건(requirements)을 활용하는 방안

V. 결 론

1.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개선방향

- 출연금은 그 집행 후에 그 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관하여 공통되는 일반법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사업별, 기관별로 제각기 관리되고 있어 재정통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음.
- 출연금 지원의 목적 :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부합하는가?
-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
 - 개별 법률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는가?
 - 일반적 업무지원규정을 출연근거로 확대해석하지 않는가?
- 재정지원의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의 쟁점
 - 업무수행상 재정지원수단을 출연금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 출연금 이외의 다른 재정지원수단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가?
 - 규정형식상 “출자·출연·융자 또는 보조” 또는 “경비(자금, 예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 규율내용의 구체성과 위임의 명확성원칙 충족 여부
 - 지원의 주체, 대상(기관), 대상사업, 요건, 절차, 기준, 액수(한도 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 위임의 형식(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적절한지 여부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모두 반영하였는가?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넘어서 규정하지 않았는가?
- 부수규정(관리·감독)
 -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 있는지?
 -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환수) 규정이 있는지?
 - 벌칙규정, 사후정산 규정 등 기타 관리·감독규정이 있는지?

2.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개선방안

- 보조금은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선정절차, 지급, 성과평가, 사후관리·감독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출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음.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11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6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안전행정부는 2013년 11월 15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안 제32조의3),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안 제37조의2),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안 제53조의3),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안 제60조 제3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체계 및 재정투·융자 전 반과 출자·출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현제도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 법에 근거를 명확히 두려는 것이며 민간위원을 3/4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신설되는 위원회이나 비상설기구이고, 참석, 심사수당 등만 지급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체계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보다 강화된 규율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되는 구조인데, 이종의 감독체계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보충성이라는 자치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됨.
-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사전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으나, 경로의존성이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규제의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가능하고 필요할 것임.
- 보조금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보조금의 규모 및 대상자 선정 및 집행 그리고 집행 이후의 성과평가와 관리·감독을 효율성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체계를 실질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3.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出資)·출연(出捐)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

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의 절차와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음.

- 보조금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위탁사업자로 이어지는 간접보조의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이에 위반할 시에 처벌하고 있으나, 출연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⁶⁶⁾
-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서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됨.⁶⁷⁾

○ 주요내용

- 이 법의 적용대상(안 제2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과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등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 관리 기대
- 주민복리의 증진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식회사·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자·출연과 설립 전 협의(안 제4~7조)
-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인사 등(안 제9~15조)

66) 이에 대하여는 『II. 4. 소결 : 재정지원수단의 유형별 검토의 실익』 참조.

67) 이는 2013년 11월 14일 정부(안전행정부)발의입법으로서 의안번호는 7767번이 부여되었다.

-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과 회계(안 제16~19조)
 -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안 제24조)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공시 등(안 제28~33조)
-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기존의 법적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규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산서에 기재되는 세출과목이 달리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국가재정법」제54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기획재정부가 재정당국으로서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 출연금의 경우에는 세출과목이 350으로 단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정부출연연구기관인지 여부)과 사업비의 성격(연구개발비인지 여부) 그리고 출연의 주체(정부부처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지 여부) 등에 따라 법적 규율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게 됨.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국회 예산정책처, 『출연사업평가』, 2010. 6.

국회 예산정책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2009. 5.

옥동석, 『공공기관의 출자·출연·보조제도의 합리화 방안』, 국회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수탁과제, 2008.

조일윤·김세진,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VI) - 일본 - 』,
한국법제연구원, 2008.

2. 외국 문헌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독일연방재정청), 23. Subventionsbericht
(제23차 보조금보고서), 2009-2012.

CBO, 『Federal Grant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oncepts for
Legislative Design and Oversight』, 2000.

*Daniel R. Mandelker/Dawn Clark Netsch/Peter W. Salsich, Jr./Judith
Welch Wegner*,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a Federal
System, Cases and Materials (4th ed.)』, 1996.

David R. Beam, “Washington's Regulation of States and Localities:
Origins and Issues”, 『Intergovernmental Perspective』 Vol. 7 Issue
3, Summer 1981.

Garrett L. Hatch, 『The Feder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
Implementation and Proposed Amendments』, CRS Report for Congress,
2008. 10. 22.

J. Richard Aronson & John L. Hilley, 『Financ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 (4th Edition)』, The Brooking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6.

Morton Grodzins, 『The American System』, Chicago : Rand McNally, 1966.

U. 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mproving Federal Grants Management -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 An Assessment and Proposed Policies (A-53)』, ACIR, Washington, D.C., February 1977.

宮本憲一 編, 『補助金の政治経済學』, 朝日新聞社, 1990.

齊藤忠雄, “國庫支出金の 再編過程”, 日本財政法學會 編, 『地方財政の變貌と法』, 勁草書房(東京), 2005.

3. 인터넷 자료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s/111/s303/text>

<http://www.grants.gov/web/grants/home.html;jsessionid=99spSd7bnvqsRHsykDn11MLGNkv7hLnDkCNj4l6LbqkmgyhFXNLy>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www.law.cornell.edu/uscode/pdf/uscode31/lii_usc_TI_31_CH_63_SE_6301.pdf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8/41/contents>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www.local.communities.gov.uk/finance/1314/settle.htm#Settle>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hc1213/hc09/0948/0948.pdf>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omb/circulars/a102/a102.pdf>

<https://www.cfda.gov/?s=generalinfo&mode=list&tab=list&tabmode=list&static=assistance>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s://www.cfda.gov/?s=generalinfo&mode=list&tab=list&tabmode=list&static=grants>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s://www.cfda.gov/?s=main&mode=list&tab=list>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s://www.cfda.gov/?s=program&mode=form&tab=step1&id=9c65ee04a1ada656181bf86083ad799c>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s://www.cfda.gov/?s=program&mode=form&tab=step1&id=e84a0c173c3cbb533696ab104af0c788>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s://www.cfda.gov/?s=program&mode=form&tab=step1&id=e84a0c173c3cbb533696ab104af0c788>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s://www.cfda.gov/?s=program&mode=form&tab=step1&id=f2af56397d54f867364907585086b740>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s://www.cfda.gov/index?s=program&mode=form&tab=core&id=cab21c2834d6923505113f1b9dc1e05d>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s://www.cfda.gov/index?s=program&mode=form&tab=core&id=cab21c2834d6923505113f1b9dc1e05d>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https://www.cfda.gov/index?s=program&mode=form&tab=core&id=e8e78e131dd3b1b8f62b08b703df4868> (2013년 12월 5일 최종방문)

www.USAspending.gov

부 록

1.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⁶⁸⁾

영문법령	국문 번역
<p>SECTION 1. SHORT TITLE</p> <p>This Act may be cited as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p>	<p>제 1 조(약칭)</p> <p>이 법률은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1999)”으로 약칭된다.</p>
<p>SEC. 2. FINDINGS.</p> <p>Congress finds that --</p> <p>(1) there are over 600 different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to implement domestic policy;</p> <p>(2) while the assistance described in paragraph (1) has been directed at critical problems, some Federal administrative requirements may be duplicative, burdensome or conflicting, thus impeding cost-effective delivery of services at the local level;</p> <p>(3) the Nation’s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and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are dealing with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which require the delivery and coordination of many kinds of services; and</p> <p>(4) streamlining and simplification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porting requirements will improve the delivery of services to</p>	<p>제 2 조(조사)</p> <p>의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한다.</p> <p>(1) 국내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600여 개의 다른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p> <p>(2) 제1항에 규정된 지원이 비판적 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일부 연방행정의 요건은 이중으로 되어 부담이 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지방차원에서의 비용/편익 서비스전달을 방해하게 되는지 여부</p> <p>(3) 연방의 주, 지방 및 부족정부, 민간 비영리조직은 점증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의 전달 및 조정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여부</p>

68) 이에 대한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참조 가능함.

<http://www.gpo.gov/fdsys/pkg/PLAW-106publ107/pdf/PLAW-106publ107.pdf>

<p>the public.</p>	
<p>SEC. 3. PURPOSES.</p> <p>The purposes of this Act are to --</p> <p>(1)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p> <p>(2) simplify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applic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s;</p> <p>(3) improve the delivery of services to the public; and</p> <p>(4) facilitate greater coordination among those responsible for delivering such services.</p>	<p>제 3 조(목적) 본 법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p> <p>(1)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의 성과 및 효율성 증진</p> <p>(2) 연방재정지원의 적용 및 보고요건의 단순화</p> <p>(3) 공중에 대한 서비스전달의 개선</p> <p>(4) 이러한 서비스 전달에 대한 책임 있는 자 사이의 다양한 조정장치 활성화</p>
<p>SEC. 4. DEFINITIONS.</p> <p>In this Act:</p> <p>(1) DIRECTOR</p> <p>The term “Director” means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p> <p>(2) FEDERAL AGENCY</p> <p>The term “Federal agency” means any agency as defined under section 551 (1)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p> <p>(3) FEDERAL FINANCIAL ASSISTANCE</p> <p>The term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has the same meaning as defined in section 7501(a)(5) of title 31, United States Code, under which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is provided, directly or indirectly, to a non-Federal entity.</p> <p>(4) LOCAL GOVERNMENT</p> <p>The term “local government” means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that is a unit of general local government (as defined under section 7501(a)(11) of title</p>	<p>제 4 조(정의)</p> <p>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책임자(Director)</p> <p>“책임자”란 용어는 예산관리처(OMB)의 책임자를 의미한다.</p> <p>(2) 연방행정청(Federal agency)</p> <p>“연방행정청”이란 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551조 제1항에 정의된 행정청을 말한다.</p> <p>(3) 연방재정지원(Federal financial assistance)</p> <p>“연방재정지원”이란 용어는 미합중국법전 제3편 제7501조 제a항 제5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 연방재정지원이란 비연방기구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p> <p>(4)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p> <p>“지방자치단체”란 용어는 주(State)의 정치적 하위조직을 의미하는 일반적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말한다(미합</p>

31, United States Code).

(5) NON-FEDERAL ENTITY

The term “non-Federal entity” means a State, local government, or nonprofit organization.

(6) NONPROFIT ORGANIZATION

The term “nonprofit organization” means any corporation, trust, association, cooperative, or other organization that—

- (A) is operated primarily for scientific, educational, service, charitable, or similar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 (B) is not organized primarily for profit; and
- (C) uses net proceeds to maintain, improve, or expand the operations of the organization.

(7) STATE

The term “State” means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the Virgin Islands, Guam, American Samoa,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th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and any instrumentality thereof, any multi-State, regional, or interstate entity which has governmental functions, and any Indian Tribal Government.

(8) TRIBAL GOVERNMENT

The term “tribal government” means an Indian tribe,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7501(a)(9) of title 31, United States Code.

(9) UNIFORM ADMINISTRATIVE RULE

중국법전 제31편 제7501조 제(a)항 제11호에 정의된 바와 같다).

(5) 非연방기구(non-Federal entity)

“비연방기구”란 주,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조직을 의미한다.

(6)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이란 용어는

- (A) 주로 과학적, 교육적, 의무제공적, 자선적인, 또는 공익상 단순한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 (B) 주로 영리목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 (C) 조직의 활동을 유지, 개선 또는 확대하기 위해 네트(망) 진행을 사용하는 기업, 신탁, 조합, 협동조합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7) 州(State)

“州”란 용어는 미합중국의 주, 콜롬비아 특별지구, 푸에르토리코 연방, 버지니아 섬, 괌, 미 사모아, 北 메리어나 섬 및 태평양 섬 신탁통치지구, 그리고 그에 의한 대행기관, 다국적 주, 정부기능을 가진 지역 또는 州際機構, 인디언 부족정부를 의미한다.

(8) 부족정부(tribal government)

“부족정부”란 용어는 미합중국법전 제31편 제7501조 제a항 제9호에 정의된 인디언 부족을 말한다.

(9) 통일행정규칙(uniform administrative rule)

“통일행정규칙”이란 용어는 연방행정청에 범용되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을 배가하기 위해 적용되는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요건에 대한 정부에 통용되는 통일행정규칙을 말한다.



<p>The term “uniform administrative rule” means a Government wide uniform rule for any generally applicable requirement established to achieve national policy objectives that applies to multipl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cross Federal agencies.</p>	
<p>SEC. 5. DUTIES OF FEDERAL AGENCIES.</p> <p>(a) IN GENERAL</p> <p>Except as provided under subsection (b), not later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each Federal agency shall develop and implement a plan that</p> <p>(1) streamlines and simplifies the application, administrative, and reporting procedures for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agency;</p> <p>(2) demonstrate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agency process under section 6(a)(2);</p> <p>(3) demonstrates appropriate agency use, or plans for use, of the common application and reporting system developed under section 6(a)(1);</p> <p>(4) designates a lead agency official for carrying 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agency under this Act;</p> <p>(5) allows applicants to electronically apply for, and report on the use of, funds from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administered by the agency;</p>	<p>제 5 조 (연방행정청의 의무)</p> <p>(a) 일반사항</p> <p>제b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제정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각 연방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p> <p>(1) 행정청에 의해 관리되는 연방재정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절차를 적용, 관리 및 보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단순화하는 계획</p> <p>(2) 제6조 제a항 제2호의 행정청간 절차의 적극적 참여를 설명하는 계획</p> <p>(3) 적절한 행정청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계획, 제6조 제a항 제1호 아래에 개발된 시스템의 보고 및 일반적 적용에 대한 계획</p> <p>(4) 이 법률 아래에서 행정청의 책임성을 수행하기 위한 주도적인 행정청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p> <p>(5) 실행자로 하여금 전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행정청에 의해 관리되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의 사용 및 기금조성에 대해 보고하는 계획</p> <p>(6)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에</p>

<p>(6) ensures recipients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vide timely, complete, and high quality information in response to Federal reporting requirements; and</p> <p>(7) in cooperation with recipients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establishes specific annual goals and objectives to further the purposes of this Act and measure annual performance in achieving those goals and objectives, which may be done as part of the agency's annual planning responsibilities under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Public Law 103 - -62; 107 Stat. 285).</p> <p>(b) EXTENSION</p> <p>If a Federal agency is unable to comply with subsection (a), the Director may extend for up to 12 months the period for the agency to develop and implement a plan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a).</p> <p>(c) COMMENT AND CONSULTATION ON AGENCY PLANS</p> <p>(1) COMMENT</p> <p>Each agency shall publish the plan developed under subsection (a) in the Federal Register and shall receive public comment of the plan through the Federal Register and other means (including electronic means).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each Federal agency shall hold public forums on the plan.</p> <p>(2) CONSULTATION</p>	<p>계 연방공보요건에 상응하여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고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계획</p> <p>(7) 연방재정지원의 수혜자와의 협력하에, 이 법률의 목적을 더 심화하는, 1993년 정부성과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하에 행정청의 연간기획책임의 일부로서 행해진 특정한 연간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 계획</p> <p>(b) 연장</p> <p>연방행정청이 제a항에 상응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자는 12개월까지 행정청이 제a항에 따른 계획의 실행과 개발을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c) 행정청계획의 의견제출 및 상담</p> <p>(1) 의견제출(comment)</p> <p>각 행정청은 제a항하에 개발된 계획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하여야 하고, 연방관보와 기타 수단(전자적 수단을 포함)을 통한 계획에 대한 공중의 의견제출을 수령해야 한다. 각 연방행정청은 최대한 실천가능한, 계획에 관한 공중의 포럼을 개최해야 한다.</p> <p>(2) 상담(consultation)</p>
---	--

<p>The lead official designated under subsection (a)(4) shall consult with representatives of non-Federal entities during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pla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s of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04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34).</p> <p>(d) SUBMISSION OF PLAN</p> <p>Each Federal agency shall submit the plan developed under subsection (a) to the Director and Congress and report annually thereafte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and performance of the agency in meeting the goals and objectives specified under subsection (a)(7). Such report may be included as part of any of the general management reports required under law.</p>	<p>제a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책임공무원은 계획의 개발과 시행을 위해 비연방기구의 대표와 상담한다. 주, 지방 및 부족정부의 대표와의 상담은 no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제204조와 일치해야 한다(2 U.S.C. 1534).</p> <p>(d) 계획의 제출</p> <p>각 연방행정청은 제a항하에 개발된 계획을 책임자와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후 제 a항 제7호 하에 특정된 목표와 목적을 조율하여 계획의 시행 및 행정청의 수행에 관해 매년 보고해야 한다. 각 보고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관리보고의 일부로서 포함될 것이다.</p>
<p>SEC. 6. DUTIES OF THE DIRECTOR.</p> <p>(a) IN GENERAL</p> <p>The Director, in consultation with agency heads and representatives of non-Federal entities, shall direct, coordinate, and assist Federal agencies in establishing</p> <p>(1) a common application and reporting system, including</p> <p>(A) a common application or set of common applications, wherein a non-Federal entity can apply for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from multipl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that serve similar purposes and are administered by different Federal agencies;</p>	<p>제 6 조 (책임자의 의무)</p> <p>(a) 일반사항</p> <p>행정청의 수장 및 비연방기구의 대표와 상의하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정함에 있어 지시하고 조정하며, 지원한다.</p> <p>(1) 아래의 사항에 관한 일반적용 및 보고시스템</p> <p>(A) 유사한 목적에 제공되고 다른 연방행정청에 의해 관리되는 복합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비연방기구가 연방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용 또는 일련의 일반적용</p>

<p>(B) a common system, including electronic processes, wherein a non-Federal entity can apply for, manage, and report on the use of funding from multipl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that serve similar purposes and are administered by different Federal agencies; and</p> <p>(C) uniform administrative rules for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cross different Federal agencies; and</p> <p>(2) an interagency process for addressing</p> <p>(A) ways to streamline and simplify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porting requirements for non-Federal entities;</p> <p>(B) improved interagency and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sharing of data pertaining to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including appropriate information sharing consistent with section 552a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nd</p> <p>(C) improvements in the timeliness, completeness, and quality of information received by Federal agencies from recipients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p> <p>(b) LEAD AGENCY AND WORKING GROUP</p> <p>The Director may designate a lead agency to assist the Director in carrying out the responsibilities under this section. The Director may use interagency working groups to assist in carrying out such responsibilities.</p> <p>(c) REVIEW OF PLANS AND REPORTS</p>	<p>(B) 유사한 목적에 제공되고 다른 연방행정청에 의해 관리되는 복합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기금사용에 관해 비연방기구가 신청하고, 관리하며 보고하는 전자과정을 포함한 일반시스템</p> <p>(C) 각 연방행정청에 범용되는 연방 재정지원프로그램을 위한 통일행정규칙, 그리고</p> <p>(2) 아래의 사항에 관한 행정청간 의견표명의 과정</p> <p>(A) 연방재정지원 행정과정을 강조하고 단순화하며, 비연방기구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을 보고하는 방식</p> <p>(B) 행정청간 그리고 정부간 정보수집의 조정을 개선하고, 연방재정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유 데이터의 공유(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552a조와 일치하여 공유하는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여)</p> <p>(C) 연방재정지원의 수혜자로부터 연방행정청이 수령한 정보의 시의적절성, 완성도 및 품질의 개선</p> <p>(b) 주무행정청과 실무그룹</p> <p>책임자는 이 조항하에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이 책임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는 행정청간 작업그룹을 활용하여 그러한 책임성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p> <p>(c) 계획 및 보고의 심사</p> <p>책임자의 요구에 의해 행정청은 책임</p>
---	--



<p>Upon the request of the Director, agencies shall submit to the Director, for the Director's review, information and other reporting regarding agency implementation of this Act.</p> <p>(d) EXEMPTIONS The Director may exempt any Federal agency or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from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if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the Federal agenc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number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p> <p>The Director shall maintain a list of exempted agencies which shall be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s Internet site.</p> <p>(e) REPORT ON RECOMMENDED CHANGES IN LAW Not later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Director shall submit to Congress a report containing recommendations for changes in la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and coordination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p> <p>(f) DEADLINE All actions requir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arried out not later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p>	<p>자에게 책임자의 심사, 정보 및 기타 행정청의 동법의 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p> <p>(d) 면제조항 연방행정청이 상당수의 연방재정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책임자가 결정하는 경우에, 책임자는 연방행정청이나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이 법률의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 책임자는 예산관리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게 이용할 수 있는 면제 행정청의 리스트를 유지해야 한다.</p> <p>(e) 법의 개선사항에 관한 권고 보고서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자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 실행 및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에 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위한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f) 최종기한 이 장에서 요청하는 모든 행위는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p>
<p>SEC. 7. EVALUATION. (a) IN GENERAL</p>	<p>제 7 조 (평가) (a) 일반사항</p>

<p>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shall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Act. Not later than 6 year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evalua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lead agency, the Director, and Congress. The evaluation shall be performed with input from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and nonprofit organizations.</p> <p>(b) CONTENTS</p> <p>The evaluation under subsection (a) shall</p> <p>(1)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is Act in meeting the purposes of this Act and make specific recommendations to furth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p> <p>(2) evaluate actual performance of each agency in achieving the goals and objectives stated in agency plans; and</p> <p>(3) assess the level of coordination among the Director, Federal agencies,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implementing this Act.</p>	<p>일반회계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이 법률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평가는 주무행정청, 책임자 및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주, 지방 및 부족정부 그리고 非영리기관에서 입력된 사항을 가지고 수행된다.</p> <p>(b) 내용</p> <p>제a항에 따른 (일반회계원의) 평가는</p> <p>(1) 이 법률의 목적에 맞게 동법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이 법률의 시행을 진행하기 위한 특정한 권고를 하며,</p> <p>(2) 행정청의 계획에 언급된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행정청의 실제 수행을 평가하고,</p> <p>(3) 책임자, 연방행정청, 주·지방·부족정부와의 조정수준을 유지한다.</p>
<p>SEC. 8. COLLECTION OF INFORMATION.</p> <p>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Director or any Federal agency from gathering, or to exempt any recipient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from providing,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for review of the financial integrity or quality of services of an activity assisted by a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p>	<p>제 8 조 (정보의 수집)</p> <p>이 법률에서는 책임자 또는 연방행정청의 정보의 수집을 방해하거나, 연방재정지원의 수령자가 정보제공을 배제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정보는 연방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활동 서비스의 질과 재정통합에 대한 심사를 위해 요구된다.</p>
<p>SEC. 9. JUDICIAL REVIEW.</p> <p>There shall be no judicial review of co</p>	<p>제 9 조 (사법심사)</p> <p>이 법률의 특정 조항의 준수와 준수</p>

mpliance or noncompliance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No provision of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by any administrative or judicial action.	수에 대한 사법심사는 할 수 없다. 이 법률에는 행정이나 사법상의 조치를 통해 강제할 수 있고, 권리나 수익, 실체적 또는 절차적인 근거를 추론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SEC. 10. STATUTORY REQUIREMENTS.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s a means to deviate from the statutory requirements relating to applicabl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제10조 (법령의 요건) 이 법률에는 적용가능한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에 관한 법적 요건을 위배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SEC. 11. EFFECTIVE DATE AND SUNSET. This Act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shall cease to be effective 8 years after such date of enactment.	제11조 (유효일 및 만기일) 이 법률은 제정일에 효력을 발하고, 제정일 후 8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2. 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⁶⁹⁾

상원(S. 303)에서는 ‘199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률을 재수권(re-authorize)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통과 결의되었고, 하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영문 법령(원문)	국문 번역
SECTION 1. SHORT TITLE; TABLE OF CONTENTS. (a)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Federal	제 1 조(약칭, 목차) (a) 약칭 이 법률은 ‘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

69) 미국 제111회 국회 회기 (2009 - 2010). 2009년 12월 14일 하원에서 통과된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참조 가능함(<http://www.govtrack.us/congress/bills/111/s303/text>).

<p>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p> <p>(b) Table of Contents The table of contents for this Act is as follows:</p> <p>Sec. 1. Short title; table of contents. Sec. 2. Reauthorization. Sec. 3. Website relating to Federal grants. Sec. 4. Report on implementation. Sec. 5. Strategic plan. Sec. 6. Data standard requirements.</p>	<p>리개선법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으로 표기할 수 있다.</p> <p>(b) 목차(Table of Contents) 이 법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p> <p>제1조 약칭 ; 목차 제2조 재-수권 제3조 연방 보조금에 관한 웹사이트 제4조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 제5조 전략적 계획 제6조 정보기준요건</p>
<p>SEC. 2. REAUTHORIZATION.</p> <p>Section 11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31 U.S.C. 6101 note) is amended--</p> <p>(1) in the section heading, by striking ‘and sunset’; and</p> <p>(2) by striking ‘and shall cease to be effective 8 years after such date of enactment’.</p>	<p>제 2 조 재수권</p> <p>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 (31 U.S.C. 6101 참조)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1) 조항의 제목에서 ‘일몰’이라는 문구를 삭제함 (2) 조항의 내용에서 ‘제정일 후 8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는 문구를 삭제함.</p>
<p>SEC. 3. WEBSITE RELATING TO FEDERAL GRANTS.</p> <p>Section 6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31 U.S.C. 6101 note) is amended--</p> <p>(1) by redesignating subsections (e) and (f) as subsections (g) and (h), respectively;</p> <p>(2) by inserting after subsection (d) the following new subsections:</p> <p>(e) Website Relating to Federal Grants</p>	<p>제 3 조 연방 보조금에 관한 웹사이트</p> <p>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31 U.S.C. 6101 참조)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p> <p>(1) 하위조항 (g)와 (h)는 각각 하위조항 (e)와 (f)로 재구성된다. (2) 다음의 새로 개정되는 하위조항은 (d)항 다음에 삽입한다. (e) 연방보조금에 관한 웹사이트</p>



<p>(1) IN GENERAL The Director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public website that serves as a central point of information and access for applicants for Federal grants.</p> <p>(2) CONTENT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website establish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for each Federal grant</p> <p>(A) the grant announcement; (B) the statement of eligibility relating to the grant; (C)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the grant; (D) the purposes of the grant; (E) the Federal agency funding the grant; (F) the deadlines for applying for and awarding of the grant. (G) all applications received for the grant, set forth in the single data standard adopted under section 9(b); and (H) all reports relating to the use of the grant, set forth in the single data standard adopted under section 9(b).</p> <p>(3) USE BY APPLICANTS The website establish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racticable, allow grant applicants to</p> <p>(A) use the website with any computer platform;</p> <p>(B) search the website for all Federal grants by type, purpose, funding agency</p>	<p>(1) 일반사항(총칙) (관리예산처)장은 연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웹사이트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2) 내용(CONTENTS)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그 웹사이트는 연방 보조금에 대하여 최소한 하위조항들에 정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p> <p>(A) 연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의) 공지 (B) 연방보조금에 관한 수급자격 기준에 대한 발표 (C) 연방보조금의 신청요건 (D) 보조금의 (지급)목적 (E)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연방기관 (F)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시한 (G) 제9(b)조에 따라서 채택된 단일한 정보기준에 의거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신청사항 (H) 제9(b)조에 따라서 채택된 단일한 정보기준에 의거한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보고사항</p> <p>(3) 신청인에 의한 (웹사이트의) 활용 동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웹사이트는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보조금 신청인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p> <p>(A) 컴퓨터 운영체제(플랫폼)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B) 재정지원의 유형(보조금, 융자, 계약 등), 목적, 자금집행기관, (보조)프</p>
--	---

y, program source, and other relevant criteria;

(C) apply for a Federal grant using the website;

(D) manage, track, and report on the use of Federal grants using the website; and

(E) provide all required certifications and assurances for a Federal grant using the website.

(4) USE BY THE PUBLIC

The website establish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racticable, allow members of the public to

(A) view the items described in paragraph (2);

(B) navigate easily among and between the items described in paragraph (2) and other supporting materials;

(C) download grant applications and reports, in the single data standard adopted under section 9, individually or as a single data set; and

(D) access individual grant applications and reports at web addresses that are distinct, permanent, unique, and searchable.

로그래밍의 근거 그리고 다른 관련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연방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C) 그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연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D) 그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연방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 추적 그리고 보고한다.

(E) 그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연방보조금을 위한 인증(certifications)과 보증(assurances)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일반 국민들에 의한 (웹사이트의) 활용

동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웹사이트는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일반 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A) 일반인들은 (2)항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들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B) 일반인들은 (2)항에 기술된 사항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손쉽게 웹사이트 내에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C) 제9(b)조에 따라서 채택된 단일한 정보기준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혹은 일련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보조금 신청서과 집행보고서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D) 인터넷 웹 사이트의 주소가 명확히 특정되어 구분되고, 쉽게 변동되지 않고 지속되며,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주소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신청사항과 집행내역에 관한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p>(f) Publication of Information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otherwise exempt under section 55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popularly referred to a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3) in subsection (h), as so redesignated, by striking ‘All actions’ and inserting ‘Except for actions relating to establishing the website required under subsection (e), all actions’.</p>	<p>(f) 정보의 공표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것도 미국 법전 제5장(소위 “정보의 자유 법률”) 제552조에서 면제하고 있는 것 이외의 정보의 공표를 획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3) 하위조항 (h)에서 다시 개정된 바와 같이 ‘모든 행위’에 관한 내용은 폐지하고, 그 대신 ‘하위조항 (e)에 의거하여 획득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관련된 행위들을 제외한 모든 행위들’에 관한 내용을 삽입한다.</p>
<p>SEC. 4. REPORT ON IMPLEMENTATION.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31 U.S.C. 6101 note) is amended by striking section 7 and inserting the following: SEC. 7.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a) In General- Not later than 9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and every 2 years thereafter until the date that is 15 year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the Director shall submit to Congress a report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b) Contents- ‘(1) IN GENERAL Each report under subsection (a) shall include, for the applicable period</p>	<p>제 4 조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서 1999년의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률(31 U.S.C. 6101 참조)은 제7조를 삭제하고, 다음의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개정한다. 제 7 조 (보조금) 집행에 대한 평가 (a) 일반사항(총칙) 200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률을 제정한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그리고 동법 제정일로부터 15년이 될 때까지 2년마다 한 번씩 (예산관리처)장은 이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운영한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b) 내용 (1) 일반사항(총칙) (a) 에서 규정하는 각 보고서는 실제 적용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p>

<p>(A) a list of all grants for which an applicant may submit an application using the website established under section 6(e);</p> <p>(B) a list of all Federal agencies that provid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to non-Federal entities;</p> <p>(C) a list of each Federal agency that has complied, in whole or in part,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p> <p>(D) for each Federal agency listed under subparagraph (C), a description of the extent of the compliance with this Act by the Federal agency;</p> <p>(E) a list of all Federal agencies exempted under section 6(d);</p> <p>(F) for each Federal agency listed under subparagraph (E)--</p> <p>(i) an explanation of why the Federal agency was exempted; and</p> <p>(ii) a certification that the basis for the exemption of the Federal agency is still applicable;</p> <p>(G) a list of all common application forms that have been developed that allow non-Federal entities to apply, in whole or in part, for multipl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includ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dministered by different Federal agencies) through a single common application;</p> <p>(H) a list of all common forms and requirements that have been developed th</p>	<p>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A) 보조금 신청인이 6(e) 조에서 구축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보조금의 목록</p> <p>(B) 연방조직이 아닌 단체(기관)에 대하여 연방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연방기관의 목록</p> <p>(C) 이 법률에 따를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조건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각 연방기관의 목록</p> <p>(D) (C)호에 따라서 기재된 각 연방기관을 위하여 연방기관이 이 법률에 의거하여 어떤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범위)에 대한 설명</p> <p>(E) 제 6(d) 조항 하에서 면제된 연방기관의 목록</p> <p>(F) (E)호에 따라서 적용이 면제된 연방기관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보고되어야 한다.</p> <p>(i) 그 연방기관이 적용에서 면제된 이유에 대한 설명 ; 그리고</p> <p>(ii) 그 연방기관이 적용에서 면제된 (법적) 근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증</p> <p>(G) 연방조직이 아닌 단체(기관)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한 번의 공통의 신청으로도 복수의 연방 재정 지원프로그램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통의 (보조금)신청서 양식 전체 목록</p> <p>(H) 연방조직이 아닌 단체(기관)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복수의 연방 재정지원프로그램 (이는 ‘다른 연방기관에 의해 집행된 연방 재정지</p>
--	--

at allow non-Federal entities to report, in whole or in part, on the use of funding from multipl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includ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dministered by different Federal agencies);

(I) a description of the efforts made by the Director and Federal agencies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with representatives of non-Federal entit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under this Act;

(J) a description of the efforts made by the Director to work with Federal agencies to meet the goals of this Act, including a description of working groups or other structures used to coordinate Federal efforts to meet the goals of this Act; and

(K)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of all systems being used to disburs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to non-Federal entities.

(2) SUBSEQUENT REPORTS

The second report submitted under subsection (a), and each subsequent report submitted under subsection (a), shall include

(A) a discussion of the progress made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meeting the goals of this Act, including the amendments made by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and in implementing the

원프로그램'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금을 집행한 내역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통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서와 조건들에 대한 목록

(I) 관리예산처장과 연방기관이 이 법률에 따른 요구조건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연방조직이 아닌 기관의 대표자와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설명

(J) 관리예산처장이 연방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는 연방기관들이 서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들을 관리예산처의 실무그룹 혹은 다른 조직들이 어떻게 조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그리고

(K) 연방의 재정지원을 연방조직이 아닌 단체(기관)들에 배분(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설명 및 확인

(2) 후속 보고서

(a)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두 번째 보고서 그리고 각각 그에 수반되는 보고서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A) 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에 의해 이뤄진 개선(변화)사항들을 포함하여, 이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기울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제8조에 의하여 제출된 전략적

<p>strategic plan submitted under section 8, including an evaluation of the progress of each Federal agency that has not received an exemption under section 6(d) towards implementing the strategic plan; and</p> <p>(B) a compilation of the reports submitted under section 8(c)(3) during the applicable period.</p> <p>(c) Definition of Applicable Period In this section, the term ‘applicable period’ means</p> <p>(1) for the first report submitted under subsection (a), the most recent full fiscal year before the date of the report; and</p> <p>(2) for the second report submitted under subsection (a), and each subsequent report submitted under subsection (a), the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the most recent report under subsection (a) was submitted and ending on the date of the report.’.</p>	<p>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 6(d) 조에 의한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은 각 연방기관들이 발전한 것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전략적 계획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논의</p> <p>(B) 동법의 적용기간 동안 제 8(c)(3) 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보고서의 모음집</p> <p>(c) 적용기간의 정의 이 법에서 ‘적용기간(applicable period)’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의미한다.</p> <p>(1) (a)항에 따른 첫 번째 보고서의 제출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 내의 보고서의 발행일자</p> <p>(2) (a)항에 따른 두 번째 보고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개별 보고서의 제출기간은 (a) 항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가장 최근의 보고서가 발행되는 날짜에 시작하여 그 보고서의 발행일자에 끝난다.</p>
<p>SEC. 5. STRATEGIC PLAN.</p> <p>(a) In General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31 U.S.C. 6101 note) is further amended</p> <p>(1) by redesignating sections 8, 9, 10, and 11 as sections 9, 10, 11, and 12, respectively; and</p> <p>(2) by inserting after section 7, as amended by this Act, the following new section:</p> <p>‘SEC. 8. STRATEGIC PLAN.</p>	<p>제 5 조 전략적 계획</p> <p>(a) 일반사항(총칙) 199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31 U.S.C. 6101 참조)은 다음과 같이 더 개정된다.</p> <p>(1) 제 8, 9, 10 그리고 11조는 제 9, 10, 11 그리고 12조로 각각 수정한다.</p> <p>(2) 제7조 뒤에, 이 법률(2009년도 법률)에 의해 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한다.</p> <p>제 8 조 전략적 계획 (STRATEGIC PLAN)</p>

<p>(a) In General</p> <p>Not later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the Director shall submit to Congress a strategic plan that</p> <p>(1) identifies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that are suitable for common applications based on the common or similar purposes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p> <p>(2) identifies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that are suitable for common reporting forms or requirements based on the common or similar purposes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p> <p>(3) identifies common aspects of multipl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that are suitable for common application or reporting forms or requirements;</p> <p>(4) identifies changes in law, if any, needed to achieve the goals of this Act; and</p> <p>(5) provides plans, timelines, and cost estimates for</p> <p>(A) developing an entirely electronic, web-based process for manag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including the ability to</p> <p>(i) apply for Federal financial assistance;</p> <p>(ii) track the status of applications for and payments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p>	<p>(a) 일반사항(총칙)</p> <p>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예산관리처장은 의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연방의 재정지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공통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에 적합한 연방의 재정지원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함</p> <p>(2) 연방의 재정지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보고하는 양식 또는 요구조건 등을 공통으로 하기에 적합한 연방의 재정지원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함</p> <p>(3) 공통으로 신청하거나 보고하는 양식 또는 요구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더라도 적합한 복수의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의 공통점을 확인함</p> <p>(4) 만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여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있다면 확인함</p> <p>(5) 다음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시간표 그리고 비용 등의 예상견적을 제공함</p> <p>(A) 다음의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완전히 전자적인 방식의 웹을 기반으로 한 연방의 재정지원을 운영하는 절차</p> <p>(i) 연방의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것</p> <p>(ii) 연방의 재정지원에 대한 신청과 (선정)지급의 처리상태를 추적하는 것</p>
--	--

<p>(iii) report on the use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including how such use has been in furtherance of the objectives or purposes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and</p> <p>(iv) provide required certifications and assurances;</p> <p>(B) ensuring full compliance by Federal agenc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including the amendments made by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p> <p>(C) creating common applications for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identified under paragraph (1), regardless of whether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re administered by different Federal agencies;</p> <p>(D) establishing common financial and performance reporting forms and requirements for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identified under paragraph (2), regardless of whether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re administered by different Federal agencies;</p> <p>(E) establishing common applications and financial and performance reporting forms and requirements for aspects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identified under paragraph (3), regardless of whether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re administered by different Federal agencies;</p>	<p>(iii) 연방의 재정지원을 집행한 내역을 보고하는 것, 이는 연방 재정지원의 목적과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러한 자금집행이 이뤄져 왔는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p> <p>(iv) (보조금 신청 내지 지급시) 필요한 인증과 보증을 제공하는 것</p> <p>(B) 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을 개정한 것을 포함하여 이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연방기관들이 완전하게 준수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p> <p>(C) 비록 다른 연방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들이라 하더라도, (1)에 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지향하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이라고 확인된 사안이라면 이들을 공통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p> <p>(D) 비록 다른 연방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들이라 하더라도, (2)에 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지향하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이라고 확인된 사안이라면 이들의 재정적 성과에 대한 보고양식과 이들에 부과되는 요구조건 등을 공통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p> <p>(E) 비록 다른 연방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들이라 하더라도, (3)에 의하여 (공통점이 확인되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이라고 확인된 사안이라면 이들의 재정적 성과에 대한 보고양식과 이들에 부과되는 요구조건 등을 공통으로 하는 것</p>
--	--

(F) developing mechanisms to ensure compatibility between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administration systems and State systems to facilitate the importing and exporting of data;

(G) developing common certifications and assurances, as appropriate, for all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that have common or similar purposes, regardless of whether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re administered by different Federal agencies;

(H) minimizing the number of different systems used to disburs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and

(I) applying the single data standard adopted under section 9 to Federal grants and grant applications.

(b) Consultation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strategic plan under subsection (a), the Director shall consult with representatives of non-Federal entities and Federal agencies that have not received an exemption under section 6(d).

(c) Federal Agencies-

(1) IN GENERAL

Not later than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irector submits the strategic plan under subsection (a), the head of each Federal agency that has not received an exemption under section 6(d) shall develop a plan that describes how the Federal agency will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ederal agency under the strategic plan, which shall

(F) 연방의 재정지원관리시스템과 주의 시스템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는 장치(메카니즘)를 개발하여 (보조금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의 원활한 흐름을 활성화하는 것

(G) 비록 다른 연방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들이라 하더라도, 공통의 또는 유사한 목적을 지향하는 모든 연방재정지원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적절한 인증과 보증을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H) 연방의 재정지원을 분배(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기 다른 시스템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

(I) 연방보조금과 보조금의 신청에 대하여 제9조 하에서 채택된 단일한 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

(b) 협의(Consultation)

(a)에 의거한 전략적 계획을 실제로 집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리에 산처장은 제 6(d) 조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지 않은 연방기관들과 연방조직이 아닌 단체(기관)들의 대표자들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c) 연방기관들 (Federal Agencies)

(1) 일반사항(총칙)

예산관리처장이 (a)에 의거하여 전략적 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6(d)조에 의한 적용제외를 받지 못하는 연방기관의 장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방기관이 그 전략적 계획 하에서 부과되는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담고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include

(A) clear performance objectives and timeliness for action by the Federal agency in furtherance of the strategic plan; and

(B) the identification of measures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representatives of non-Federal entities on an on-going basi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2) CONSULTATION

The head of each Federal agency that has not received an exemption under section 6(d) shall consult with representatives of non-Federal entities during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plan of the Federal agency developed under paragraph (1).

(3) REPORTING

Not later than 2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head of a Federal agency that has not received an exemption under section 6(d) develops the plan under paragraph (1), and every 2 years thereafter until the date that is 15 year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the head of the Federal agency shall submit to the Director a report regarding the progress of the Federal agency in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plan of the Federal agency developed under paragraph (1).⁷

(b) Technical and Conforming Amendment- Section 5(d)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 연방기관이 전략적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의 명확한 성과목표와 시한 등

(B) 이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조직이 아닌 단체(기관)의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수단)들의 확인

(2) 협의(CONSULTATION)

제6(d)조에 의한 적용제외를 받지 못하는 연방기관의 장은 (1)호에 의거하여 각 연방기관의 장이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조직이 아닌 단체(기관)의 장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보고(REPORTING)

제6(d)조에 의한 적용제외를 받지 못하는 연방기관의 장이 (1)호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리고 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률의 제정일로부터 15년동안 2년에 한번씩, 연방기관의 장이 수립한 (1)호에 의거한 (구체적 행동)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예산과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기술적 그리고 조정을 위한 개정 199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31 U.S.C. 6101 참조) 제5(d)조는 다음의

<p>t Act of 1999 (31 U.S.C. 6101 note) is amended by inserting ‘, until the date on which the Federal agency submits the first report by the Federal agency required under section 8(c)(3)’ after ‘subsection (a)(7)’.</p>	<p>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연방기관이 (a)(7)항에 이어서 제8(c)(3)조에 의거하여 획득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p>
<p>SEC. 6. DATA STANDARD REQUIREMENTS.</p> <p>(a) Data Standard Requirements-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31 U.S.C. 6101 note) is further amended</p> <p>(1) by redesignating sections 9, 10, 11, and 12 as sections 10, 11, 12, and 13, respectively; and</p> <p>(2) by inserting after section 8, as added by this Act, the following new section:</p> <p>SEC. 9. DATA STANDARD REQUIREMENTS.</p> <p>(a) Data Standard Requirements-</p> <p>(1) REQUIREMENT</p> <p>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adopt a single data standard for the collec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of business and financial information for use by private sector entities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for information required to be reported to the Federal Government, and a single data standard for use by agencies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c) for Federal financial information.</p> <p>(2) CHARACTERISTICS OF DATA ST</p>	<p>제 6 조 정보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 (DATA STANDARD REQUIREMENTS).</p> <p>(a) 정보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 199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31 U.S.C. 6101 참조)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p> <p>(1) 제9, 10, 11 그리고 12조는 각각 제10, 11, 12, 그리고 13조로 수정한다.</p> <p>(2) 동법에서 제8조에 이어 다음의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여 삽입한다.</p> <p>제 9 조 정보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p> <p>(a) 정보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p> <p>(1) 조건</p> <p>관리예산처장은 (b)항에 부합하는 민간부문의 단체(기관)들이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에 관한 재정적 정보와 사업실적 등을 수집, 분석하고 배포하기 위한 단일한 정보기준을 채택하여야 하고, 이는 연방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관리처장은 (c)항에 부합하는 연방정부 내의 기관들이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에 관한 단일한 정보기준을 채택하여 연방의 재정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2) 정보기준의 특성</p>

ANDARDS

The single data standards required by paragraph (1) shall

(A) be common across all agencies,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B) be a widely accepted, non-proprietary, searchable, computer-readable format for business and financial data;

(C) be consistent with and implement-

(i) United State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r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s appropriate);

(ii) industry best practices; and

(iii) Federal regulatory requirements;

(D) improve the transparency, consistency, and usability of business and financial information; and

(E) be capable of being continually upgraded to be of maximum use as technologies and content evolve over time.

(b) Implementation of Single Data Standard for Private Sector-

(1) OMB GUIDANCE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issue guidance to agencies on the use and implementation of the single data standard required by subsection (a) for information required to be reported to agencies b

(1)호에 의거하여 요청되는 단일한 정보 기준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A) 이는 실제로 적용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모든 기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B) 널리 수용되고, 독점적인 특허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검색가능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읽을 수 있는 형식의 사업적·재정적 정보여야 한다.

(C) 그리고 다음 사항들과 합치되게 실제로 운용되어야 한다.

(i)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원칙들 혹은 연방의 재정회계기준들(그 중에서 적절한 것 선택 가능)

(ii)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최상의 관행들 ; 그리고

(iii) 연방의 규제조건들

(D) 이는 사업적·재정적 정보의 투명성, 일관성 그리고 활용가능성을 증진하여야 하고

(E)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과 콘텐츠(내용)가 발전하게 되면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b) 민간부문을 위한 단일한 정보기준의 적용

(1) 관리예산처의 지침

관리예산처장은 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의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조금을 수령한) 민간부문이 연방기관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a)항에 의거하여 요청되는 단일한 정보기준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guidance)을 발간하여야 한다.

<p>y the private sector.</p> <p>(2) AGENCY REQUIREMENTS</p> <p>(A) REQUIREMENT</p> <p>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nd consistent with the guidance provid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require the use of the single data standard required by subsection (a) for business and financial information reported to the agency by private sector companies.</p> <p>(B) IMPLEMENTATION</p> <p>The head of the agency shall begin implementing the requirement of subparagraph (A)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p> <p>(c) Implementation of Single Data Standard for Federal Government</p> <p>(1) OMB DEVELOPMENT</p> <p>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develop the single data standard required by subsection (a) for use by agencies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for Federal financial information.</p> <p>(2) OMB GUIDANCE</p> <p>Not later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the Director shall issue guidance</p>	<p>(2)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p> <p>(A) (1)호에 따라서 예산관리처에서 제공하는 정보기준의 (운영에 관한) 지침과 부합되도록 실제 적용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각 연방기관의 장은 (a)항의 조건과 같이 민간부문의 기업들이 연방기관에게 사업적·재정적 정보를 보고할 때 단일한 정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B) 적용</p> <p>연방기관의 장은 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의 요구사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시작하여야 한다.</p> <p>(c) 연방정부를 위한 단일한 정보기준의 적용</p> <p>(1) 관리예산처(에서 단일한 정보기준)의 수립</p> <p>관리예산처장은 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률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방정부 내에서 연방의 재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a)항에 따른 단일한 정보기준을 개발·수립한다.</p> <p>(2) 관리예산처의 지침</p> <p>관리예산처장은 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률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호에 의하여 개발·수립된 단일한 정보기준을 실제 활용하고</p>
--	--

dance to agencies on the use and implementation of the single data standard developed under paragraph (1).

(d) Public Access to Data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ensure that information collected using the single data standards required under this section is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in that forma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e) Report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9,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of the Senate a report on the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f) Definitions

In this section:

(1) AGENCY

The term ‘agency’ means any executive department, military department, Government corporation, Government controlled corporation, independent establishment, or other establishment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r any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but does not include

적용하는 지침을 발간하여 연방기관들에 배포한다.

(d) (보조금관련)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가능성

각 (연방)기관의 장은 이 조항에 따라서 단일한 정보기준을 활용하여 수집한 (사업·재정) 정보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용가능한 형식으로 일반 대중들이 접근가능한 것이 되도록 확실하게 보증하여야 한다.

(e) 보고

2009년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예산처장은 하원의 정부개혁감시위원회(th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그리고 상원의 국토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of the Senate)에 대하여 이 조항을 실제 적용하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정의

이 조항에서는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1) 기관

‘기관(agency)’이라는 용어는 행정부처, 군대, 국영기업(Government corporation), 공기업(Government controlled corporation), 정부 부처 내에 있는 독립적으로 설립된 단체(independent establishment) 혹은 기타 단체들(other establishment) 또는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등을 모두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체(기관)는 포함하지 않는다.

<p>(A)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p> <p>(B) the Federal Election Commission;</p> <p>(C) the governments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of the territories and possess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various subdivisions; or</p> <p>(D) 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facilities, including laboratories engaged in national defense research and production activities.</p> <p>(2) EXECUTIVE DEPARTMENT, MILITARY DEPARTMENT, GOVERNMENT CORPORATION, GOVERNMENT CONTROLLED CORPORATION, INDEPENDENT ESTABLISHMENT</p> <p>The terms ‘Executive department’, ‘military department’, ‘Government corporation’, ‘Government controlled corporation’, and ‘independent establishment’ have the meanings given those terms by chapter 1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p> <p>(3)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p> <p>The term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has the meaning given that term by section 3502(5) of title 44, United States Code.</p> <p>(b) Requirement for Use of Single Data Standard by Federal Agencies- Section 5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31 U.S.C. 6101 note)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new subsection:</p>	<p>(A) (의회 내에 있는) 정부책임기관(GAO 과거의 '회계감사원'에서 명칭 변경)</p> <p>(B) 연방 선거관리위원회</p> <p>(C) 콜롬비아 주정부 그리고 미국 점령지역(푸에르토리코, 괌, 마이크로네시아, 버진아일랜드, 마리아나스, 미국 사모아 등) 그리고 그 부속기관들 ; 또는</p> <p>(D) 정부가 소유하지만 계약자가 운영하는 시설(GOCO), 여기에는 국방연구 및 생산활동에 관계된 연구소들이 포함된다.</p> <p>(2) 행정부처, 군대, 국영기업, 공기업, 독립적으로 설립된 단체 ‘행정부처’, ‘군대’, ‘국영기업(Government corporation)’, ‘공기업(Government controlled corporation)’, ‘독립적으로 설립된 단체(independent establishment)’ 용어의 의미는 미국 법전 제5장(title 5) 제1장(chapter 1)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p> <p>(3) 독립규제기관</p> <p>‘독립규제기관’이라는 용어는 미국 법전 제44장(title 44) 제 3502(5) 조에 규정된 용어의 의미를 갖는다.</p> <p>(b) 연방기관이 단일한 정보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 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31 U.S.C. 6101 참조) 제5조는 다음의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추가함으로써 개정한다.</p>
---	---

<p>(e) Single Data Standard Requirement-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nd consistent with the guidance provided by the Director under section 9, each Federal agency shall require the use of the single data standard adopted under section 9(b) for</p> <p>(1) all applications for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and</p> <p>(2) all reports on the use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that the agency requires non-Federal entities to submit.</p>	<p>(e) 단일한 정보기준의 조건 제9조에 의거하여 관리예산처장이 제공하는 지침에 상응하도록 적용가능한 최대한도로 각 연방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9(b)조에 따라서 채택한 단일한 정보기준을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p> <p>(1) 연방의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경우</p> <p>(2) 연방기관이 연방조직이 아닌 단체(기관)에 대하여 연방의 재정지원을 수령하여 집행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때 그에 관한 모든 보고서</p>
---	--

3. 일본의 재정지원법령에 대한 유형별 검토

(1) 보조금 등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일본 원문	국문 번역
<p>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昭和30年8月27日法律第179号)</p> <p>最終改正：平成14年12月13日法律第152号</p> <p>第一章 総則 (第一条—第四条) 第二章 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及び決定 (第五条—第十条) 第三章 補助事業等の遂行等 (第十一条—第十六条) 第四章 補助金等の返還等 (第十七条—第二十一条) 第五章 雑則</p>	<p>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쇼와 30년 8월 27일 법률 제179호)</p> <p>최종개정: 헤세이 14년 12월에 13일 법률 제152호</p> <p>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제2장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 및 결정 (제5조 - 제10조) 제3장 보조 사업 등의 수행 등 (제11조 - 제16조) 제4장 보조금 등의 반환 등 (제17조 - 제21조) 제5장 잡칙</p>



<p>(第二十一条の二—第二十八条) 第六章 罰則 (第二十九条—第三十三条) 附則</p> <p>第一章 總則</p> <p>(この法律の目的)</p> <p>第1条 この法律は、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決定等に関する事項その他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に関する基本的事項を規定することにより、補助金等の交付の不正な申請及び補助金等の不正な使用の防止その他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並びに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適正化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p> <p>(定義)</p> <p>第2条 この法律において「補助金等」とは、国が国以外の者に対して交付する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p> <p>一 補助金</p> <p>二 負担金（国際条約に基く分担金を除く。）</p> <p>三 利子補給金</p> <p>四 その他相当の反対給付を受けない給付金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p> <p>2 この法律において「補助事業等」とは、補助金等の交付の対象となる事務又は事業をいう。</p> <p>3 この法律において「補助事業者等」とは、補助事業等を行う者をいう。</p> <p>4 この法律において「間接補助金等」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p> <p>一 国以外の者が相当の反対給付を受けないで交付する給付金で、補助</p>	<p>(제21조의2 - 제28조) 제6장 벌칙 (제29조 -제33조) 부칙</p> <p>제1장 총칙</p> <p>(이 법률의 목적)</p> <p>제1조 이 법은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의 부정한 신청 및 보조금 등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 기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 및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정의)</p> <p>제2조 이 법에서 "보조금 등"이란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p> <p>一. 보조금</p> <p>二. 부담금 (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을 제외한다)</p> <p>三. 이자보급금</p> <p>四.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이고 대통령이 정하는 것</p> <p>2. 이 법에서 "보조사업 등"이란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p> <p>3. 이 법률에서 "보조사업자 등"이란 보조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p> <p>4. 이 법률에서 "간접보조금 등"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p> <p>一. 국가 이외의 자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이</p>
---	---

<p>金等を直接又は間接にその財源の全部又は一部とし、かつ、当該補助金等の交付の目的に従って交付するもの</p> <p>二 利子補給金又は利子の軽減を目的とする前号の給付金の交付を受け る者が、その交付の目的に従い、利子を軽減して融通する資金</p> <p>5 この法律において「間接補助事業等」とは、前項第一号の給付金の交付又は同項第二号の資金の融通の対象となる事務又は事業をいう。</p> <p>6 この法律において「間接補助事業者等」とは、間接補助事業等を行う者をいう。</p> <p>7 この法律において「各省各庁」とは、財政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三十四号）第二十一条に規定する各省各庁をいい、「各省各庁の長」とは、同法第二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各省各庁の長をいう。</p> <p>(関係者の責務)</p> <p>第3条 各省各庁の長は、その所掌の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に当つては、補助金等が国民から徴収された税金その他の貴重な財源でまかなわれるものであることに特に留意し、補助金等が法令及び予算で定めるところに従つて公正かつ効率的に使用され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2 補助事業者等及び間接補助事業者等は、補助金等が国民から徴収された税金その他の貴重な財源でまかなわれるものであることに留意し、</p>	<p>며 보조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또한 당해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따라 제출 교부하는 것</p> <p>二. 이자보급금 또는 이자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전호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교부의 목적에 따라 이자를 경감해서 융통하는 자금</p> <p>5. 이 법률에서 "간접보조사업 등"이란 전호 제1항의 급부금의 교부 또는 동항 제2호의 자금 융통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p> <p>6. 이 법률에서 "간접보조사업자 등"이란 간접보조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p> <p>7. 이 법에서 "각성각청"이란 재정법(쇼와 22년 법률 제34호)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각성각청을 말하며, "각성각청의 장"이란 동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각성각청의 장을 말한다.</p> <p>(관계자의 책무)</p> <p>제3조 각성각청의 장은 그 소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 등이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세금 기타 귀중한 재원으로 충당된다는 것에 특히 유의하여 보조금 등이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2.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이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세금 기타 귀중한 재원으로부터 충당된다는 것에 유의하여 법령의 규정 및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 또는</p>
--	--

<p>法令の定及び補助金等の交付の目的又は間接補助金等の交付若しくは融通の目的に従つて誠実に補助事業等又は間接補助事業等を行う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他の法令との関係)</p> <p>第4条 補助金等に関しては、他の法律又はこれに基く命令若しくはこれを実施するための命令に特別の定のあるものを除くほか、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p> <p>第二章 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及び決定 (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p> <p>第5条 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契約の申込を含む。以下同じ。)をしようとする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補助事業等の目的及び内容、補助事業等に要する経費その他必要な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に各省各庁の長が定める書類を添え、各省各庁の長に対しその定める時期まで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p> <p>第6条 1. 各省各庁の長は、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申請に係る書類等の審査及び必要に応じて行う現地調査等により、当該申請に係る補助金等の交付が法令及び予算で定めるところに違反しないかどうか、補助事業等の目的及び内容が適正であるかどうか、金額の算定に誤がないかどうか等を調査し、補助金等を交付すべきものと認めるときは、すみやかに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契約の承諾の決</p>	<p>간접보조금 등의 교부 혹은 융통의 목적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 등 또는 간접보조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p> <p>(다른 법령과의 관계)</p> <p>제4조 보조금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 혹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장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p> <p>제5조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계약의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령(政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사업 등의 목적 및 내용, 보조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작성 각청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 각청의 장에게 그 결정시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p> <p>제6조 1. 작성 각청의 장은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과 관련된 서류 등의 심사를 위해 또는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당해 신청에 따른 보조금 등의 교부가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지 않는지, 보조사업 등의 목적 및 내용이 적정한지, 금액 산정에 잘못이 없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등을 교부해야 한다고 인정했을 때는, 신속하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p>
---	--

定を含む。以下同じ。)をしなければならぬ。

2 各省各庁の長は、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が到達してから当該申請に係る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をするまでに通常要すべき標準的な期間(法令により当該各省各庁の長と異なる機関が当該申請の提出先とされている場合は、併せて、当該申請が当該提出先とされている機関の事務所に到達してから当該各省各庁の長に到達するまでに通常要すべき標準的な期間)を定め、かつ、これを公表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各省各庁の長は、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適正な交付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に係る事項につき修正を加えて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規定により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に係る事項につき修正を加えてその交付の決定をするに当たっては、その申請に係る当該補助事業等の遂行を不当に困難とさせ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補助金等の交付の条件)

第7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をする場合において、法令及び予算で定める補助金等の交付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条件を附するものとする。

一 補助事業等に要する経費の配分の変更(各省各庁の長の定める軽微

(계약의 수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2. 작성 각청의 장은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이 도달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을 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필요한 표준적인 기간(법령에 의하여 당해 작성 각청의 장과 다른 기관이 당해 신청의 제출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아울러, 당해 신청이 당해 제출처로 되어 있는 기관의 사무실에 도달한 후로부터 당해 작성 각청의 장에게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보통의 표준적인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작성 각청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적정한 교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을 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그 교부결정을 하려면 그 신청에 따른 해당 보조사업 등의 수행을 부당하게 곤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등의 교부조건)

제7조 작성 각청의 장은 보조금 등의 교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一. 보조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배 분 변경(작성 각청의 장이 정하는

<p>な変更を除く。) 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各省各庁の長の承認を受けるべきこと。</p> <p>二 補助事業等を行うため締結する契約に関する事項その他補助事業等に要する経費の使用方法に関する事項</p> <p>三 補助事業等の内容の変更(各省各庁の長の定める軽微な変更を除く。) 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各省各庁の長の承認を受けるべきこと。</p> <p>四 補助事業等を中止し、又は廃止する場合においては、各省各庁の長の承認を受けるべきこと。</p> <p>五 補助事業等が予定の期間内に完了しない場合又は補助事業等の遂行が困難となった場合においては、すみやかに各省各庁の長に報告してその指示を受けるべきこと。</p> <p>2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等の完了により当該補助事業者等に相当の収益が生ず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補助金等の交付の目的に反しない場合に限り、その交付した補助金等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金額を国に納付すべき旨の条件を附することができる。</p> <p>3 前二項の規定は、これらの規定に定める条件のほか、各省各庁の長が法令及び予算で定める補助金等の交付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条件を附するこ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p> <p>4 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に附する条件は、公正なものでなければならず、いやしくも補助金等の交付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限度をこえ</p>	<p>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각성 각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p> <p>二. 보조사업 등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기타 보조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p> <p>三. 보조사업 등의 내용 변경(각성 각청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각성 각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四. 보조사업 등을 중지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각성 각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五. 보조사업 등을 예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보조사업 등의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각성 각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한다.</p> <p>2. 각성 각청의 장은 보조사업 등이 완료함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자 등에 상당한 수익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p> <p>3. 앞의 2항의 규정은 이 규정에 규정된 조건 이외에 각성 각청의 장이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p> <p>4.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부과할 조건은 공정한 것이어야 하고, 보조금</p>
---	---

て不当に補助事業者等に対し干渉をするようなものであつてはならない。

(決定の通知)

第8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をしたときは、すみやかにその決定の内容及びこれに条件を附した場合にはその条件を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申請の取下げ)

第9条 補助金等の交付の申請をした者は、前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領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通知に係る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内容及びこれに附された条件に不服があるときは、各省各庁の長の定める期日までに、申請の取下げ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の取下げがあつたときは、当該申請に係る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は、なかつたものとみなす。

(事情変更による決定の取消等)

第10条 1. 各省各庁の長は、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後の事情の変更により特別の必要が生じたときは、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取り消し、又はその決定の内容及びこれに附した条件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補助事業等のうちすでに経過した期間に係る部分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各省各庁の長が前項の規定により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を取り消す

등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 부당하게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결정의 통지)

제8조 각성 각청의 장은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에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보조금 등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하)

제9조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을 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통지에 관계된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이에 부과된 조건에 불복이 있는 때는 각성 각청의 장이 정한 마감일까지 신청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에 관한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등)

제10조 1. 각성 각청의 장은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결정내용 혹은 이에 부과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는 도중에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성 각청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을 취

ことができる場合は、天災地変その他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後生じた事情の変更により補助事業等の全部又は一部を継続する必要がなくなつた場合その他政令で定める特に必要な場合に限る。

3 各省各庁の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取消により特別に必要となつた事務又は事業に対し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補助金等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

4 第八条の規定は、第一項の処分を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章 補助事業等の遂行等

(補助事業等及び間接補助事業等の遂行)

第11条 補助事業者等は、法令の定並びに補助金等の交付の内容及びこれに附した条件その他法令に基く各省各庁の長の処分に従い、善良な管理者の注意をもつて補助事業等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いやしくも補助金等の他の用途への使用(利子補給金にあつては、その交付の目的となつてゐる融資又は利子の軽減をしないことにより、補助金等の交付の目的に反してその交付を受けたことにな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をしてはならない。

2 間接補助事業者等は、法令の定及び間接補助金等の交付又は融通の目的に従い、善良な管理者の注意をもつて間接補助事業等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いやしくも間接補助金等の他の用途への使用(利子の軽減を目的とする第二条第四項第一号の給

소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기타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기타 정령(政令)이 정하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각성 각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4.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처분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보조사업 등의 수행 등

(보조사업 등 간접보조사업 등의 수행)

제11조 보조사업자 등은 법령의 규정 및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이에 부과된 조건 기타 법령에 의거한 각성 각청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이자보급금에 있어서는 그 교부목적이 되는 용자 또는 이자의 경감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에 위배해서 그 교부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서는 안 된다.

2. 간접보조사업자 등은 법령의 규정 및 간접보조금 등의 교부 또는 융통의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간접보조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간접보조금 등의 다른 용도에 사용(이자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2조 제4항 제1항의 급부

付金にあつては、その交付の目的となつてゐる融資又は利子の軽減をしないことにより間接補助金等の交付の目的に反してその交付を受けたことになることをいい、同項第二号の資金にあつては、その融通の目的に従つて使用しないことにより不当に利子の軽減を受けたことにな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 をしてはならない。

(状況報告)

第12条 補助事業者等は、各省各庁の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補助事業等の遂行の状況に関し、各省各庁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補助事業等の遂行等の命令)

第13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者等が提出する報告等により、その者の補助事業等が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内容又はこれに附した条件に従つて遂行され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これらに従つて当該補助事業等を遂行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者等が前項の命令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者に対し、当該補助事業等の遂行の一時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実績報告)

第14条 補助事業者等は、各省各庁の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補助事業等が完了したとき(補助事業等の廃止の承認を受けたときを含む。)は、補助事業等の成果を記載した補助事業等実績報告書に各省各庁の長の定める書類

금에 있어서는 그 교부목적이 되는 용자 또는 이자의 경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간접보조금 등의 교부목적에 위배해서 그 교부를 받게 된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자금에 있어서는 그 용통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이자 경감을 받게 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서는 안 된다.

(상황보고)

제12조 보조사업자 등은 각성 각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에 관하여 각성 각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등의 수행 등의 명령)

제13조 각성 각청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보고 등에 따라 그 자의 보조사업 등이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이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할 수 있다.

2. 각성 각청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당해 보조사업 등의 수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실적보고)

제14조 보조사업자 등은 각성 각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등이 완료될 때(‘보조사업 등의 폐지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조사업 등의 성과를 기재한 보조사업 등의 실적보고서에 각성 각청의 장이 정

を添えて各省各庁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に係る国の会計年度が終了した場合も、また同様とする。

(補助金等の額の確定等)

第15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等の完了又は廃止に係る補助事業等の成果の報告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は、報告書等の書類の審査及び必要に応じて行う現地調査等により、その報告に係る補助事業等の成果が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内容及びこれに附した条件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かどうかを調査し、適合すると認めるときは、交付すべき補助金等の額を確定し、当該補助事業者等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是正のための措置)

第16条 1.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等の完了又は廃止に係る補助事業等の成果の報告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報告に係る補助事業等の成果が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内容及びこれに附した条件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当該補助事業等につき、これに適合させるための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当該補助事業者等に対し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第十四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従って行う補助事業等について準用する。

第四章 補助金等の返還等

(決定の取消)

第17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者等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 각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관한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보조금 등의 금액의 확정 등)

제15조 작성 각청의 장은 보조사업 등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 보조사업 등의 성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고서 등의 심사를 위해 혹은 필요에 따라서 현지조사 등에 의하여 그 보고에 관한 보조사업 등의 성과가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이에 부과된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교부해야 할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하고 당해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을 위한 조치)

제16조 1. 작성 각청의 장은 보조사업 등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 보조사업 등의 성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고에 따른 보조사업 등의 성과가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이에 부과된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그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해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2. 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하는 보조사업 등에 대해 준용한다.

제4장 보조금 등의 반환 등

(결정의 취소)

제17조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등을 다

가, 補助金等の他の用途への使用をし、その他補助事業等に関して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内容又はこれに附した条件その他法令又はこれに基く各省各庁の長の処分に違反したときは、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2 各省各庁の長は、間接補助事業者等が、間接補助金等の他の用途への使用をし、その他間接補助事業等に関して法令に違反したときは、補助事業者等に対し、当該間接補助金等に係る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は、補助事業等について交付すべき補助金等の額の確定があつた後においても適用があるものとする。

4 第八条の規定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取消を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補助金等の返還)

第18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を取り消した場合において、補助事業等の当該取消に係る部分に関し、すでに補助金等が交付されているときは、期限を定めて、その返還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者等に交付すべき補助金等の額を確定した場合において、すでにその額をこえる補助金等が交付されているときは、期限を定めて、その返還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3 各省各庁の長は、第一項の返還

된 용도로 사용하고 기타 보조사업 등에 관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에 부과된 조건 기타 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각성 각청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각성 각청의 장은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간접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기타 간접보조사업 등에 관해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각성 각청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간접보조금 등에 관한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조사업 등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 등의 금액의 확정기 있는 후에도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보조금 등의 반환)

제18조 각성 각청의 장은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을 취소 한 경우, 보조사업 등 당해 취소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미 보조금 등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각성각청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교부해야 할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 한 경우에 이미 그 금액을 넘는 보조금 등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각성각청의 장은 제1항의 반환명령에 따른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の命令に係る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取消が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返還の期限を延長し、又は返還の命令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加算金及び延滞金)

第19条 補助事業者等は、第十七条第一項の規定又はこれに準ずる他の法律の規定による処分に関し、補助金等の返還を命ぜられ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命令に係る補助金等の受領の日から納付の日までの日数に応じ、当該補助金等の額（その一部を納付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後の期間については、既納額を控除した額）につき年十・九五パーセントの割合で計算した加算金を国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補助事業者等は、補助金等の返還を命ぜられ、これを納期日までに納付しなかつた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期日の翌日から納付の日までの日数に応じ、その未納付額につき年十・九五パーセントの割合で計算した延滞金を国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各省各庁の長は、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加算金又は延滞金の全部又は一部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他の補助金等の一時停止等)

第20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事業者

것인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반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가산금 및 연체금)

제19조 보조사업자 등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이에 준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받은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령에 관한 보조금 등의 수령 날로부터 납부의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그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은 이미 납부 금액을 공제한 금액) 에 대해서는 1년에 10.95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받고 이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의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그 미납부액에 대해 1년에 10.95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한다.

3. 각성각청의 장은 앞의 2항의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또는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른 보조금 등의 일시 정지 등)

제20조 각성각청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

등が補助金等の返還を命ぜられ、当該補助金等、加算金又は延滞金の全部又は一部を納付し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者に対して、同種の事務又は事業について交付すべき補助金等があるときは、相当の限度においてその交付を一時停止し、又は当該補助金等と未納付額とを相殺することができる。

(徴収)

第21条 各省各庁の長が返還を命じた補助金等又はこれに係る加算金若しくは延滞金は、国税滞納処分の例により、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補助金等又は加算金若しくは延滞金の先取特権の順位は、国税及び地方税に次ぐものとする。

第五章 雑則

(理由の提示)

第21条の2 各省各庁の長は、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取消し、補助事業等の遂行若しくは一時停止の命令又は補助事業等の是正のための措置の命令をするときは、当該補助事業者等に対してその理由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財産の処分の制限)

第22条 補助事業者等は、補助事業等により取得し、又は効用の増加した政令で定める財産を、各省各庁の長の承認を受けずに、補助金等の交付の目的に反して使用し、譲渡し、交換し、貸し付け、又は担保に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政令で定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이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받고 당해 보조금 등 가산금 또는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하여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보조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한도 내에서 그 교부를 일시 정지 또는 당해 보조금 등과 미 납부액과를 상쇄 할 수 있다.

(징수)

제21조 각성각청의 장이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 등 또는 이에 관한 가산금 혹은 연체금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조금 등 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5장 잡칙

(이유 제시)

제21조의2 각성각청의 장은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사업 등의 수행 또는 일시정지 명령 또는 보조사업 등의 시정을위한 조치 명령을 할 때는 당해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재산 처분의 제한)

제22조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등에 의해 취득하거나 또는 효용이 증가된 정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각성각청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위배해서 사용, 양도, 교환, 대부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立入検査等)</p> <p>第23条 各省各庁の長は、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を期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補助事業者等若しくは間接補助事業者等に対して報告をさせ、又は当該職員にその事務所、事業場等に立ち入り、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若しく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p> <p>2 前項の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関係者の要求がある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3 第一項の規定による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p> <p>(不当干渉等の防止)</p> <p>第24条 補助金等の交付に関する事務その他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に関する事務に従事する国又は都道府県の職員は、当該事務を不当に遅延させ、又は補助金等の交付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な限度をこえて不当に補助事業者等若しくは間接補助事業者等に対して干渉してはならない。</p> <p>(行政手続法 の適用除外)</p> <p>第24条の2 補助金等の交付に関する各省各庁の長の処分については、行政手続法(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号)第二章及び第三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p>	<p>(현장 검사 등)</p> <p>제23조 각성각청의 장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 혹은 간접 보조 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에게 그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시키고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p> <p>(부당한 간섭 등의 방지)</p> <p>제24조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사무 기타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직원은 당해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 부당하게 보조사업자 등 혹은 간접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간섭해서는 안 된다.</p> <p>(행정 절차법의 적용 제외)</p> <p>제24조의2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각성각청의 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헤이세이 5년 법률 제88호)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p>
--	---

(不服の申出)

第25条 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補助金等の交付の決定の取消、補助金等の返還の命令その他補助金等の交付に関する各省各庁の長の処分に対して不服のある地方公共団体（港湾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十八号）に基く港務局を含む。以下同じ。）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各省各庁の長に対して不服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2 各省各庁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不服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不服を申し出た者に意見を述べる機会を与えた上、必要な措置をとり、その旨を不服を申し出た者に対して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措置に不服のある者は、内閣に対して意見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事務の実施)

第26条 各省各庁の長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補助金等の交付に関する事務の一部を各省各庁の機関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国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補助金等の交付に関する事務の一部を都道府県が行う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が行うこととされる事務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 法定受託事務とする。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

(불복 신청)

제25조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등의 반환 명령 기타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각성각청의 장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지방 자치단체 (항만법(쇼와 25년 법률 제218 호)에 따른 항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성각청의 장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성각청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불복을 신청한 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불복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자는 내각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사무의 실시)

제26조 각성각청의 장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각성각청의 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

2. 국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도도부 현이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하는 것으로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행정절차 등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에

利用に関する法律 の適用除外)

第26条の2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手続については、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平成14年法律第151号）第三条及び第四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電磁的記録による作成)

第26条の3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り作成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申請書等（申請書、書類その他文字、図形等人の知覚によつ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情報が記載された紙その他の有体物をいう。次条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は、当該申請書等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として各省各庁の長が定めるものをいう。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作成をもつて、当該申請書等の作成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電磁的記録は、当該申請書等とみなす。

(電磁的方法による提出)

第26条の4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よる申請書等の提出については、当該申請書等が電磁的記録で作成されている場合には、電磁的方法（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その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であつて各省各庁の長が定めるも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제26조의 2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등의 정보 통신 기술 이용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4년 법률 제151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적 기록의 작성)

제26조의 3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게 된 신청서 등 (신청서, 서류 기타 문자, 도형 등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종이 기타 유체물을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은 당해 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이며 전자 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각성각청의 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조 제1항과 같다)의 작성으로 해당 신청서 등의 작성에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전자적 기록은 해당 신청서 등으로 간주한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

제26조의 4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에 대해서는 당해 신청서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기타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각성각청의 장이 정

の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をも
つて行う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申請書等の提出が電磁的方法によつて行われたときは、当該申請書等の提出を受けるべき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への記録がされた時に当該提出を受けるべき者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適用除外)

第27条 他の法律又はこれに基く命令若しくはこれを実施するための命令に基き交付する補助金等に関し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法律の一部を適用しないことができる。

(政令への委任)

第28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六章 罰則

第29条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補助金等の交付を受け、又は間接補助金等の交付若しくは融通を受け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情を知つて交付又は融通をした者も、また同項と同様とする。

第30条 第11条の規定に違反して補助金等の他の用途への使用又は間接補助金等の他の用途への使用を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十万円以下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항과 같다)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의 제출을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된 때에는 당해 신청서 등의 제출을 받아야 할 사람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 기록 되었을 때에 당해 제출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적용 제외)

제27조 다른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 혹은 이를 실시하기 위한 명령에 의거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에 관하여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률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령에의 위임)

제28조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9조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거나 또는 간접보조금 등의 교부 또는 융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사정을 알고 교부 또는 융통한 자도 동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30조 제1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간접보조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p>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p> <p>第31条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三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p> <p>一 第13条第2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p> <p>二 法令に違反して補助事業等の成果の報告をしなかつた者</p> <p>三 第23条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質問に対して答弁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た者</p> <p>第32条 法人（法人でない団体に代表者又は管理人の定のあるもの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前三条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その行為者を罰するほか、当該法人又は人に対し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p> <p>2 前項の規定により法人でない団体を処罰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代表者又は管理人が訴訟行為につきその団体を代表するほか、法人を被告人とする場合の刑事訴訟に関する法律の規定を準用する。</p> <p>第33条 前条の規定は、国又は地方公共団体には、適用しない。</p> <p>2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において第29条から第31条までの違反行為があつたときは、その行為をした各省各庁の長その他の職員又は地方公共団体の長その他の職員に対し、各本条の刑を科する。</p>	<p>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p> <p>제31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p> <p>二.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등의 성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三.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고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자</p> <p>제32조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이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의 항과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앞의 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소송행위에 대해 그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3조 전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한 각성각청의 장, 기타 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타직원에게 대해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p>
--	--

<p>附 則 抄</p> <p>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昭和二十九年度分以前の予算により支出された補助金等及びこれに係る間接補助金等に関しては、適用しない。</p> <p>2 この法律の施行前に補助金等が交付され、又は補助金等の交付の意思が表示されている事務又は事業に関しては、政令でこの法律の特例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p>	<p>부칙 추출</p> <p>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쇼와 29년도분 이전의 예산으로 지출된 보조금 등 및 이와 관련된 간접보조금 등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p> <p>2.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보조금 등이 교부되거나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 의사가 표시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해서는, 정령으로 이 법률의 특례를 마련 할 수 있다.</p>
<p>附則 (昭和34年4月20日法律第148号) 抄</p> <p>(施行期日)</p> <p>1. この法律は、国税徴収法 (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四十七号) 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公課の先取特権の順位の改正に関する経過措置)</p> <p>7. 第二章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各法令 (徴収金の先取特権の順位に係る部分に限る。) 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国税徴収法第二条第十二号に規定する強制換価手続による配当手続が開始される場合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当該配当手続が開始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法令の規定に規定する徴収金の先取特権の順位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p>	<p>부칙 (쇼와 34년 4월 20일 법률 제148호) 추출</p> <p>(시행 기일)</p> <p>1. 이 법률은 국세징수법 (쇼와 34년 법률 제147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공과외 선취특권의 순위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p> <p>7.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각 법령 (징수금의 선취특권의 순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 국세징수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하는 강제 환가절차에 의한 배당절차가 시작되는 경우에 적용하여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당해 배당절차가 시작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령의 규정에 규정하는 징수금의 선취특권의 순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附則 (昭和37年9月15日法律第161号) 抄</p>	<p>부칙 (쇼와 37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추출</p>



<p>1. この法律は、昭和37年10月1日から施行する。</p> <p>2.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規定は、この附則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この法律の施行前にされた行政庁の処分、この法律の施行前にされた申請に係る行政庁の不作為その他この法律の施行前に生じた事項についても適用する。ただし、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規定によつて生じた効力を妨げない。</p> <p>3 この法律の施行前に提起された訴願、審査の請求、異議の申立てその他の不服申立て（以下「訴願等」という。）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後も、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の法律の施行前にされた訴願等の裁決、決定その他の処分（以下「裁決等」という。）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提起された訴願等につきこの法律の施行後にされる裁決等にさらに不服がある場合の訴願等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p> <p>4 前項に規定する訴願等で、この法律の施行後は行政不服審査法による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処分に係るものは、同法以外の法律の適用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による不服申立てとみなす。</p> <p>5 第三項の規定によりこの法律の施行後にされる審査の請求、異議の申立てその他の不服申立ての裁決等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による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p>	<p>1. 이 법률은, 쇼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은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관한 행정청의 부작위, 기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p> <p>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기타 불복신청 (이하 "소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률 시행 후에도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소원 등의 재결, 결정 기타 처분 (이하 "재결 등"이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등에 대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재결 등에 더 불복이 있는 경우의 소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p> <p>4. 제3항에 규정하는 소원 등으로, 이 법률의 시행 후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처분에 관한 것은 동법 이외의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행정 불복심사법에 의한 고소라고 간주한다.</p> <p>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의 청구, 이의 신청, 기타 불복신청의 재결 등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p>
--	---

<p>6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された行政庁の処分で、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規定により訴願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され、かつ、その提起期間が定められていなかったものについて、行政不服審査法による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から起算する。</p> <p>8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p> <p>9 前八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p>	<p>6.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이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소원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되고, 그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 일로부터 기산한다.</p> <p>8.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9. 앞의 8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p>
<p>附則（昭和45年4月1日法律第13号）抄</p> <p>（施行期日） 第1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 (쇼와45년 4월 1일 법률제13호) 추출</p> <p>(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平成5年11月12日法律第89号）抄</p> <p>（施行期日） 第1条 この法律は、行政手続法（平成5年法律第88号）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p> <p>（諮問等がされた不利益処分に関する経過措置） 第2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法令に基づき審議会その他の合議制の機関に対し行政手続法第十三条に規定する聴聞又は弁明の機会の付与の手続その他の意見陳述のための手続に相当する手続</p>	<p>부칙 (헤이세이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추출</p> <p>(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 (헤이세이5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령에 따라 심의회 기타 합의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 부여 절차 기타 의견 진술을 위한 절차에 상응하는 절차</p>

<p>を執るべきことの諮問その他の求め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は、当該諮問その他の求めに係る不利益処分の手続に関して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関係法律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p> <p>(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13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p> <p>(聴聞に関する規定の整理に伴う経過措置) 第14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法律の規定により行われた聴聞、聴問若しくは聴聞会（不利益処分に係るものを除く。）又はこれらのための手続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関係法律の相当規定により行われたものとみなす。</p> <p>(政令への委任) 第15条 附則第2条から前条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p> <p>附則（平成11年7月16日法律第87号）抄</p> <p>(施行期日) 第1条 この法律は、平成十二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第一条中地方自治法第二百五十</p>	<p>를 취하기 위한 자문 가타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자문 기타 요구에 관한 불이익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청문(聽聞), 청문(聽問) 또는 청문회(불이익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위한 절차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 법률의 상당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p> <p>(정령에의 위임) 제15조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p> <p>부칙 (헤세이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추출</p> <p>(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헤세이 십이 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50조의</p>
---	--

條の次に五條、節名並びに二款及び款名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二百五十條の九第一項に係る部分（兩議院の同意を得ることに係る部分に限る。）に限る。）、第四十條中自然公園法附則第九項及び第十項の改正規定（同法附則第十項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百四十四條の規定（農業改良助長法第十四條の三の改正規定に係る部分を除く。）並びに第四百七十二條の規定（市町村の合併の特例に関する法律第六條、第八條及び第十七條の改正規定に係る部分を除く。）並びに附則第七條、第十條、第十二條、第五十九條ただし書、第六十條第四項及び第五項、第七十三條、第七十七條、第一百五十七條第四項から第六項まで、第一百六十條、第一百六十三條、第一百六十四條並びに第二百二條の規定 公布の日

(国等の事務)

第159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前において、地方公共団体の機関が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政令により管理し又は執行する国、他の地方公共団体その他公共団体の事務（附則第百六十一条において「国等の事務」という。）は、この法律の施行後は、地方公共団体が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政令により当該地方公共団体の事務として処理するものとする。

(処分、申請等に関する経過措置)

第160条 この法律（附則第一条各号に

다음에 5조, 절명과 이관(二款) 및 관명(款名)을 추가하는 개정규정(동법 제250조의9 제1항에 관한 부분(양원의 동의를 받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 중 자연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44조의 규정(농업개량조장법 제14조의 3의 개정 규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과 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7조, 제 10조, 제12조, 제59조 단서, 제60조 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 5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 제 63조, 제164조 및 제212조에 규정의 공포일

(국가 등의 사무)

제159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또는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사무(부칙 제161조에서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은 이 법률의 시행 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처리한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 계

掲げる規定については、当該各規定。以下この条及び附則第百六十三条において同じ。)の施行前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された許可等の処分その他の行為(以下この条において「処分等の行為」という。)又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されている許可等の申請その他の行為(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請等の行為」という。)で、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おいてこれらの行為に係る行政事務を行うべき者が異なることとなるものは、附則第二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又は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の経過措置に関する規定に定めるものを除き、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後におけ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適用については、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相当規定によりされた処分等の行為又は申請等の行為とみなす。

2 この法律の施行前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に対し報告、届出、提出そ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で、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は、この法律及びこれに基づく政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これを、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相当規定により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相当の機関に対して報告、届出、提出そ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ついて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とみなし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

제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당해 각 규정.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와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허가 등의 처분,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을 시행할 때 실제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의 신청,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서 이 법률의 시행의 날에 이러한 행위에 관한 행정 사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다르게 되는 것은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이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상당히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라고 간주한다.

2.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절차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 이를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한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절차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에 의한 개

の規定を適用する。

(不服申立てに関する経過措置)

第161条 施行日前にされた国等の事務に係る処分であって、当該処分をした行政庁（以下この条において「処分庁」という。）に施行日前に行政不服審査法に規定する上級行政庁（以下この条において「上級行政庁」という。）があったものについての同法による不服申立てについては、施行日以後においても、当該処分庁に引き続き上級行政庁があるものとみなして、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処分庁の上級行政庁とみなされる行政庁は、施行日前に当該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った行政庁と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上級行政庁とみなされる行政庁が地方公共団体の機関であるときは、当該機関が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により処理することとされる事務は、新地方自治法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する。

(手数料に関する経過措置)

第162条 施行日前におい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であった手数料については、この法律及びこれに基づく政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불복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이며,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 (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에 시행일 이전에 행정불복심사법에 규정 하는 상급행정청 (이하 이 조에서 "상급행정청"이라고 한다)이 있는 것에 대한 동법에 의한 불복신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처분청에 이어 상급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당해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당해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상급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사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이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었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p>(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p> <p>第163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p> <p>(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p> <p>第164条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p> <p>2 附則第十八条、第五十一条及び第百八十四条の規定の適用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p> <p>(検討)</p> <p>第250条 新地方自治法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については、できる限り新たに設け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とともに、新地方自治法別表第一に掲げるもの及び新地方自治法に基づく政令に示すものについては、地方分権を推進する観点から検討を加え、適宜、適切な見直しを行うものとする。</p> <p>第251条 政府は、地方公共団体が事務及び事業を自主的かつ自立的に執行できるように、国と地方公共団体との役割分担に応じた地方税財源の充実確保の方途について、経済情勢の推移等を勘案しつつ検討し、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p> <p>第252条 政府は、医療保険制度、年金制度等の改革に伴い、社会保険の事務処理の体制、これに従事する職員の在り方等について、被保険者等の利便性</p>	<p>(벌칙에 관한 경과조치)</p> <p>제163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기타 경과 조치의 시행령에 위임)</p> <p>제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p> <p>2. 부칙 제18조, 제51조 및 제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p> <p>(검토)</p> <p>제250조 신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새롭게 설치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신 지방자치법 별표 제1에 게재하는 것 및 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하여 적의, 적절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한다.</p> <p>제251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의 방안에 대하여 경제 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p> <p>제252조 정부는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의 개혁에 따라 사회보험의 사무처리 체제, 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 확</p>
--	---

<p>의確保、事務処理の効率化等の視点に 立って、検討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 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 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p> <p>附則（平成14年12月13日法律第152号） 抄</p> <p>（施行期日） 第1条 この法律は、行政手続等にお 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 律（平成14年法律第151号）の施行の 日から施行する。</p> <p>（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4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 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 従前の例による。</p> <p>（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第5条 前三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 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 は、政令で定める。</p>	<p>보, 사무 처리의 효율화 등의 관점에 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 로 한다.</p> <p>부칙 (헤이세이 14년 12월 13일 법률 제 152호) 추출</p> <p>(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절차 등의 정보통 신 기술 이용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4년 법률 제151호)의 시행일부터 시 행한다.</p> <p>(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중전의 예에 따른다.</p> <p>(기타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제5조 앞의 3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 치는 정령으로 정한다.</p>
---	--

(2) 회계검사원법 (쇼와 22년 4월 19일 법률 제73호, 최종개정 헤이세이 18년 6월 7일 법률 제53호)

제23조 회계검사원은 필요할 때 또는 내각의 청구가 있을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계·경리의 검사를 할 수 있다.

三.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여 또는 대부금, 손실보상 등의 재정원조를 부여하는 것의 회계

(3) 지방자치법 (쇼와22년 4월 17일 법률 제67호, 최종개정 헤이세이 25년 4월 10일 법률 제9호)

제199조 감사위원회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집행 및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경영에 관한 사업의 관리를 감사한다.

7. 감사위원회는 필요할 때 또는 보통지방자치단체 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해 보통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대부금, 손실보상, 이자보급 기타 재정적 원조를 부여하는 것의 출납 기타 사무의 집행이며 당해 재정적 원조에 관한 것을 감사할 수 있다. 당해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것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것, 당해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불을 보증하는 것,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수익권을 가지는 신탁이고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수탁자 및 당해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제24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시설의 관리를 시키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제221조

2.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대하기 위하여 공사의 청부계약자, 물품의 납입자, 보조금, 교부금, 대부금 등의 교부 혹은 대부를 받은 자(보조금, 교부금, 대부금 등의 종국의 수령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 시험, 연구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상황을 조사하거나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4) 회계법 (쇼와22년 3월 31일 법률 제35조, 최종개정: 헤이세이 18년 6월 7일 법률 제53호)

제46조 제2항 재무대신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대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각성 각청의 장에 위임하여 공사의 청부계약자, 물품의 납입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보조금의 종국의 수령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 시험, 연구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상황을 감사하여 또는 보고를 과할 수 있다.

(5) 지방재정법 (쇼와 23년 7월 7일 법률 제109호, 최종개정 헤이세이 25년 3월 30일 법률 제3호)

제16조 국가는 그 시책을 하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 국가의 부담금, 보조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출금(이하 국가의 지출금이라고 한다)의 액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국가의 지출금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제1항 국가의 부담금 및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정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대 대해서는 국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부담금 및 도도부현이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지출금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5의7 제1항 제2호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경영하는 공영기업의 폐지, 당해 폐지에 수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대하여 교부하는 부담금 또는 보조금 중에서 전호에서 정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총부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의6 지방공공단체가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광해 복구사업에 대하여 석탄광업의 구조조정의 완료 등에 수반하는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2년 법률 제16호, 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전의 임시석탄광해복구법(쇼와 27년 법률 제295호 이하 이 조에서 ‘구 복구법’이라고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혹은 정비법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에 예에 따르기로 하는 응급공사에 관해서 구 복구법 제5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하기 위하여 소요될 경비 또는 도도부현이 정비법 부칙 제2조 제1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구 복구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소요될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분간 지방채를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다.

부 칙(헤이세이 17년 3월 31일 법률 제12호)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지방특례교부금 등의 지방재정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국가의 보조금 등의 정리 및 합리화 등에 수반하는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이세이 17년 법률 제23호)의 시행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 (6) 재정운용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공채의 발행 및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편입의 특례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21년 3월 31일 법률 제17호, 최종개정: 헤이세이 22년 3월 31일 법률 제7호)

제 1 조 이 법률을 최근의 국가의 재정수지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상황

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헤이세이 21년도의 공채 발행의 특례에 관한 조치를 정하고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이 실시될 때까지의 경제상황의 호전을 도모하는 기간의 임시적인 조치로서 동년도의 국민생활의 안정 및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에 의하여 예상되는 세출의 증가에 충당하기 위하여 및 당해 시책에 의하여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의 추가에 따라 예상되는 세출의 증가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정융자자금감정으로부터 일반회계로 편입에 관한 특례조치를 정한 것으로 한다.

제 3 조 정부는 헤이세이 21년도에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9년 법률 제23호) 제58조 제3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정융자자금감정으로부터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편입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정융자 자금감정의 세출로 하여 당해 편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적립금으로부터 동 감정의 세입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한다.

(7) 임금결제에 관한 법률 (헤이세에 21년 6월 24일 법률 제59호, 최종개정 헤이세이 21년 6월 24일 법률 제58호)

제 4 조 제4호 법률로 직접 설립된 법인, 특별한 법률로 특별한 설립행위로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가 되어서 설립된 법인이며 그 자본금 또는 출자의 액수 전부가 국가 등으로부터의 출자에 의한 것, 기타 국가 등의 준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식 지불수단.

제 5 조 제2호: 전자식 지불수단을 발행하는 법인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 중에서 자가형 전불식 지불수단 만을 발행하는 자는 기준일에 그 자가형 전불식 지불수단의 기준일 미사용 잔고가 그 발행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기준액(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액을 말한다)을 넘게 될 때는 내각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내세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가형 전불식 지불수단의 발행 업무의 전부를 폐지한 후 다시 그 발행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二.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의 금액.

제 8 조: 전조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내세우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二. 자본금 또는 출자의 액수

제40조: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등록신청서 혹은 그 첨부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가 있고 혹은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빠져 있을 때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八. 이 법률, 은행법 혹은 출자의 수입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쇼와29년 법률 제195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규정에 위반하고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의 형을 포함한다)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고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법인.

十. 임원 혹은 감사 또는 회계참여 (외국자금이동업체는 국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임원 등’이라고 한다)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二(라). 이법 른, 은행법 등 출자의 수입,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혹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의한 형도 포함한다)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고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제66조 제2항 내각총리대신은 면허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면허신청서 혹은 그 첨부서류 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으며 혹은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빠져 있을 때는 면허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四. 임원 등(임원 혹은 감사 혹은 회계참여 또는 이사 혹은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 중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二(라). 이 법률, 은행법 등 출자의 수입,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혹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의한 형을 포함한다)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고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게 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